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2.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 I. 회부경위
- II. 제안사유
- III. 예산안 편성규모
 - 1. 예산안 개요
 - 2. 세입예산안
 - 3. 세출예산안
- IV. 검토의견
 - 1. 예산안 개요
 - 2.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나. 중기 재정지출 전망
 - 3. 성과계획안에 대한 검토
 - 4.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 5.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 가. 이전수입
 - 1) 중앙정부이전수입
 -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나) 국고보조금
 - 다) 특별회계전입금
 -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가) 법정이전수입
 - 나) 비법정이전수입
 - 3) 기타이전수입
 - 나. 자체수입
 - 다. 전년도이월금
 - 6.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 가. 세출예산 총괄
 - 나. 2019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 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걱정 예산 편성의 문제
 - 1) 사업 개요

2) 예산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각종 국외연수 내실화 필요

1) 사업 개요

2) 예산안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

나) 인건비

다)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라) 서울교육공론화사업

2) 교육정책국

가) 자유학기(학년)제 사업 관련

나) 서울미래학교운영

다)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

라) 교원역량성장지원

마) 중등교육연수지원

바) 인사관리

사)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3) 평생진로교육국

가)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나) 퇴직교원인생2모작사업

다) 역사교육활성화지원

라) 학교밖청소년지원

마)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바) 맞춤형진로교육

사)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아) 학교밖청소년지원

4) 교육행정국

가) 사립학교운영지도

나) 사학기관운영평가

다) 학교법인 운영지도

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 마) 재산관리일반운영비
- 바)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 사)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 아) 노후시설개선

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붙임]

1.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2. 세목별 조세체계
3.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협력사업)
4. 교육사업비 구성
5. 2020년도 국회연수 사업 예산 편성 내역
6. 교육부 산정 총액인건비와 교육청 편성 인건비 비교
7. 2019년 집단임금 보충교섭 직종 및 요구안
8.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9. 2019 교육청 각종 센터 현황
10. 2019년도 교육청 상성·비상설 구성체 현황(2019.10 기준)
11. 2020년 교원 역량신장과 관련된 정책 예산 현황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0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일
4.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II . 제안사유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모		9,972,986	9,380,315	592,671	6.3%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911,403	5,373,353	538,050	10.0%
	자치단체이전수입	3,359,390	3,169,444	189,946	6.0%
	기타이전수입	9,899	6,695	3,204	47.9%
	자체수입	159,873	159,027	846	0.5%
	지방교육채	0	0	0	-
	전년도이월금	532,421	671,796	△139,375	△20.7%
세 출	인건비	6,056,295	5,587,911	468,384	8.4%
	기관운영비	29,757	33,518	△3,761	△11.2%
	학교운영비	894,414	814,846	79,568	9.8%
	교육사업비	2,060,594	1,937,965	122,629	6.3%
	시설사업비	804,689	771,653	33,036	4.3%
	지방교육채 및 BTL	117,237	196,852	△79,615	△40.4%
	예비비	10,000	37,570	△27,570	△73.4%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911,403	59.2%	5,373,353	57.5%	538,050	10.0%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3,359,390	33.6%	3,169,444	33.9%	189,946	6.0%
기 타 이 전 수 입	9,899	0.1%	6,695	0.1%	3,204	47.9%
자 체 수 입	159,873	1.6%	159,027	1.5%	846	0.5%
지 교 육 방 채	0	0.0%	0	0.0%	0	-
순 잉 세 여 계 금	532,421	5.5%	671,796	7.0%	△139,375	△20.7%
합 계	9,972,986	100%	9,380,315	100%	592,671	6.3%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 건 비	6,056,295	60.7%	5,587,911	59.5%	468,384	8.4%
기 관 운 영 비	29,757	0.3%	33,518	0.4%	△3,761	△11.3%
학 교 운 영 비	894,414	9.0%	814,846	8.7%	79,568	9.8%
교 육 사 업 비	2,060,594	20.7%	1,937,965	20.7%	122,629	6.3%
시 설 사 업 비	804,689	8.1%	771,653	8.2%	33,036	4.3%
지 방 채 및 B T L 상 환	117,237	1.2%	196,852	2.1%	△79,615	△40.4%
예 비 비 및 기타	10,000	0.1%	37,570	0.4%	△27,570	△73.4%
합 계	9,972,986	100.0%	9,380,315	100.0%	592,671	6.3%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9,729억 8천 6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 예산 9조 3,803억 1천 5백만원 보다 5,92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1] 2016~2020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본예산액	8,001,287	8,147,725	9,151,267	9,380,315	9,972,985
전년대비 증감액	311,196	146,438	1,003,542	229,048	592,670
증 감 율	4	1.8	12.3	2.5	6.3

- 금번 예산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5.1%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이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비용이 유아수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265억 8천 5백만원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도 전년도 보다 1,393억 7천 5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1)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2019년도 보다 4,245억 2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은 228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은 1,172억 8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시도세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99억 4천 6백만원 증가하는 등 이전수입이 전년도 보다 7,312억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2] 2018~2020년 자원 의존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자원	8,347,416	91.2	8,549,492	91.1	9,280,692	93.1
자체자원	670,411	7.3	830,823	8.9	692,294	6.9
지방교육채	133,440	1.5	-	-	-	-
계	9,151,267	100.0	9,380,315	100.0	9,972,986	100.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 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의 재원 의존도는 자체재원 증가의 둔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의존재원 규모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음.

[표3] 2018~2020년 자체재원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업료 및 입학금	112,554	16.8	101,906	12.3	106,413	15.4
사용료 및 수수료	5,453	0.8	5,498	0.7	5,321	0.8
자산수입	26,418	3.9	7,990	1.0	15,261	2.2
이자수입	4,108	0.6	7,008	0.8	7,101	1.0
금융자산회수	-	0.0	16,302	2.0	350	0.1
순세계잉여금	506,772	75.6	671,796	80.9	532,421	76.9
기타수입	15,106	2.3	20,323	2.4	25,427	3.7
계	670,411	100.0	830,823	100.0	692,294	100.0

-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의존성을 탈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경기 변화에 따라 자칫 각종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교육청은 적정재원의 확보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입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임.²⁾

2)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표4] 중기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계	56,896,148	10,799,613	11,028,069	11,265,034	11,728,796	12,074,636	2.8
교 특 회 계	56,717,415	10,727,636	10,921,313	11,265,034	11,728,796	12,074,636	3.0
기 금	178,733	71,977	106,756				△100.0

- 계획기간 중 중기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56조 8,961억 4천 8백만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 운영비(사립학교 포함) 증가, 청사 이전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³⁾ 등의 지출증가로 인해 연평균 2.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재정계획 24p).

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재정계획 24~28pp)

- 정부는 2020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정책효과가 발현되는 등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⑩ (생략)

- 3)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재정계획에서는(24p) 사업지연 등으로 2021년까지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기금 존속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에 대해 향후 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2020년까지는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⁴⁾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국세수입호조세와 맞물려 일정기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상의 중기 이전수입 연평균 증가율 2.6%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2.7%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대일무역 갈등, 미국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전수입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임.

[표5] 중기 이전수입 전망⁵⁾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계	50,055,497	9,251,688	9,718,662	9,987,030	10,336,377	10,761,740	3.9
중앙정부이전수입	32,011,682	5,812,364	6,192,941	6,404,367	6,644,619	6,957,391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213,199	5,207,203	5,611,101	5,845,521	6,107,865	6,441,509	5.5
보통교부금	28,244,243	5,029,654	5,425,610	5,652,279	5,905,950	6,230,750	5.5
특별교부금	968,956	177,549	177,549	185,491	193,242	210,759	4.4
국고보조금	126,640	25,960	25,443	25,223	24,971	25,043	△0.9

4)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19.8) 참고.

5) 금번 예산안의 경우 법정이전수입의 변경이 예정되어 당초 편성분을 초과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바, 금번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경우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차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4~37pp 참고).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특 별 회 계 전 입 금	2,671,843	579,201	556,397	533,623	511,783	490,839	△4.1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18,000,718	3,430,838	3,511,196	3,575,968	3,685,062	3,797,654	2.6
법 정 이 전 수 입	16,303,402	3,121,567	3,184,201	3,232,181	3,330,445	3,435,008	2.4
시 · 도 세 전 입 금	6,697,276	1,267,922	1,292,673	1,325,043	1,377,885	1,433,753	3.1
담 배 소 비 세 전 입 금	1,238,016	254,329	250,920	247,558	244,241	240,968	△1.3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7,769,778	1,492,338	1,519,798	1,543,949	1,585,080	1,628,613	2.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426	6,059	13,256	731	380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22,213	89,246	96,269	103,846	112,018	120,834	7.9
교 육 급 여 보 조 금	55,694	11,674	11,285	11,054	10,840	10,840	△1.8
비 법 정 전 입 금	1,697,316	309,270	326,995	343,787	354,618	362,646	4.1
기 타 (민 간) 이 전 수 입	43,097	8,487	14,525	6,695	6,695	6,695	△5.8

○ 특히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8~2.6%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5~2.8%보다 하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이 전수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예측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표6] 2019년도 국내 경제성장률⁶⁾ 기관별 전망(2019.10 기준)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19년(p)	2020년(p)
정부	2019년7월3일	2.80%	2.60%
한국은행	2019년7월18일	2.80%	2.50%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9월130일	2.70%	2.30%
KDI	2019년5월22일	2.70%	2.50%
IMF	2019년10월15일	2.60%	2.20%
OECD	2019년9월19일	2.80%	2.30%
현대경제연구원	2019년9월22일	2.60%	2.30%
LG경제연구원	2019년9월26일	2.50%	1.80%
평 균		2.69%	2.32%

6)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 물론 정부가 전망한 실질성장률 2.6%는 국내 일부 경제 전문기관이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정부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역할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상을 비롯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불안,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내국세 감소의 부담요인이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중기 재정지출 전망(재정계획 29~33pp)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와 지방교육채상환 등의 보전지출 증가로 인해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 지출의 경우 학령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사업의 증가와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별 총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8%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기]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계	56,896,148	10,799,613	11,028,069	11,265,034	11,728,796	12,074,636	2.8
교육비특별회계	56,717,415	10,727,636	10,921,313	11,265,034	11,728,796	12,074,636	3.0
경 상 지 출	37,894,630	7,112,489	7,406,986	11,265,034	11,728,796	12,074,636	3.0
사 업 비	18,773,211	3,605,574	3,504,327	3,672,088	3,934,345	4,056,877	3.0
예 비 비	49,574	9,574	10,000	10,000	10,000	10,000	1.1
기 금	178,733	71,977	106,756				△100.0
기금경상지출							
기금사업비	178,733	71,977	106,756				△100.0

- 다만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은⁷⁾ 공무원 등 인건비와 같은 경상지출 증가와는 달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누리과정교육·보육비의 감소로(연평균 - 4.0%) 인 해 [표7]과 같이 매년 2.9%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총 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의 증가는 결국 재량지출 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사료됨.

[표8]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계	56,717,415	10,727,636	10,921,313	11,265,034	11,728,796	12,074,636	3.0
의 무 지 출	45,405,604	8,536,484	8,866,750	9,133,664	9,312,305	9,556,402	2.9
재 량 지 출	11,311,810	2,191,152	2,054,563	2,131,370	2,416,492	2,518,235	3.5

- 따라서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지출 증가분만큼 추가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계획안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 (이하 ‘2020 성과계획안’이

7)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라 함)을 제출하였음.⁸⁾

- 금번 2020 성과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15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93개 단위과제(성과지표수 86개)로 계획되었고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28.5%인 2조 8,413억 2천 1백만원으로 2019년도 보다 1,587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⁹⁾
- 2020 성과계획안은 모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정량(계량)지표로 설정하면서 3개의 투입지표, 7개의 과정지표, 33개의 산출지표, 50개의 결과지표로 세분화하고 있음. 다만 각 성과지표가 세부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객관적이고 적절한 측정산식을 도입하였는지, 예산안과 연계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등에 의문이 있음.
- 먼저 ‘1-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교실혁명’의 ‘⑪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금번 예산안에서는(518, 526pp) 30곳의 메이커 스

8) 「지방재정법」

-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페이스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으로 자체재원 23억, 서울시전입금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성과계획안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목표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률을 60%(18곳)로 설정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목표 설정은 예산집행의 측면에서 최대 40%의 불용률(13억 2천만원)이 발생할 것을 전제한 잘못된 성과목표의 설정으로 성과목표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표9]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현황(2019.10 기준)¹⁰⁾

순	소속	자치구	거점센터(구축교)	구축(년)	비고
1	동부	종로구	과학전시관(동부분관)	2018	발명교육센터
2	서부	마포구	아현중	2018	발명교육센터
3	서부	마포구	서울창천초	2019	발명교육센터
4	남부	구로구	구로중	2019	일반학교
5	남부	금천구	서울문백초	2019	일반학교
6	남부	금천구	서울신흥초	2019	일반학교
7	남부	구로구	과학전시관(남부분관)	2018	발명교육센터
8	북부	노원구	서울상천초	2109	일반학교
9	북부	도봉구	서울신창초	2018	발명교육센터
10	중부	용산구	서울한남초	2018	발명교육센터
11	중부	종로구	서울과학고	2019	발명교육센터
12	중부	중구	과학전시관(남산분관)	2019	직속기관
13	강동송파	송파구	아주중	2018	발명교육센터
14	강동송파	송파구	서울잠신초	2019	과학교육센터
15	강동송파	송파구	서울송례초	2019	일반학교
16	강서양천	양천구	서울계남초	2018	발명교육센터
17	강서양천	양천구	양서중	2019	일반학교
18	강남서초	강남구	서울논현초	2018	발명교육센터
19	강남서초	동작구	서울강남초	2019	과학교육센터
20	동작관악	관악구	인현중	2018	발명교육센터
21	동작관악	영등포구	서울당중초	2019	과학교육센터
22	성동광진	성동구	서울무학초	2019	과학교육센터
23	성동광진	성동구	성수중	2018	발명교육센터
24	성북강북	성북구	서울돈암초	2018	발명교육센터
25	본청	구로구	세종과학고	2019	발명교육센터
26	본청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2018	발명교육센터
27	본청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2019	발명교육센터
28	본청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	2019	발명교육센터
29	직속기관	관악구	과학전시관(본관)	2018	발명교육센터

10) 2018년 구축완료 : 13센터, 2019년 구축 진행 : 16센터

성과계획의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궁극적으로 재정 투입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안과 연계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번 2020 성과계획안의 ‘⑪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은 예산안의 사업물량에 비해 불용액의 과대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등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다음으로 성과지표 성격과 관련해서¹¹⁾ 2020 성과계획안에서는 ‘I-1②유치원컨설팅장학 만족도’ 등의 17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만족률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사업들의 만족도 측정이 전체 응답자 중 만족 이상 응답수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 측정방법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17개 사업 중 ‘I-2④초등 5,6학년까지 수영교육 만족도’, ‘II-3①초등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IV-1①학교 공기정화장치 사용자 만족도’, ‘IV-2①교육대상자 만족도’, ‘V-2②학부모 교육 만족도’, ‘V-3⑤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등의 5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산출지표로, ‘IV-1②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절차 만족도’의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로, 나머지 11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 혼용하여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1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성과지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면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음.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2020 성과계획안 180~185pp).

이러한 문제는 참여율 성과지표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I-1⑭독서 기반 수업 혁신 참여율'과 'I-2①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성과발표회 참여율' 및 'II-1①사립유치원 재정업무연수 참여율'은 결과지표로, 'II-3②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IV-2⑦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V-2⑦학업복귀 프로그램 참여 비율'과 'V-2⑬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율'의 경우는 산출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위의 참여율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전체 학교수 중 참여한 학교수' 등과 같이 참여정도를 수치화하고 있는바, 참여율이라는 동일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를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혼용하고 있음(2020 성과계획안 180~185pp).

- 이와 같이 교육청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과정, 투입, 산출, 결과지표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대한 구분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는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매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8년부터 예산안 심의 시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두거나, 성과지표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나,¹²⁾ 수년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안일한 조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함.¹³⁾

1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5p 참고.

13) 현재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리는 예산담당관 소관임.

4.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성인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14)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교육청은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

[표10]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4개	206,593,593	189,412,597	17,180,996	9.1%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3개	103,240,286	95,612,176	7,628,110	8.0%
2. 성별영향평가사업	0개	0	0	0	-
3. 교육부지정사업	19개	102,618,705	93,141,097	9,477,608	10.2%
4. 자체선정사업*	2개	734,602	659,324	75,278	11.4%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34개 사업에 2019년 보다 17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2,065억 9천 3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14)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¹⁵⁾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¹⁶⁾ 따라 선정된 사업,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오디세이학교운영(성인지 예산안 79p)과 주민참여예산운영(성인지 예산안 184p)에 불과함.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안은 여전히 자체사업 수가 적은 실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11]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사업 분류	2020년 예산안(A)	2019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중등교원연수지원	1	1,918,303	1,964,470	△46,167	△2.4%
교장및기관장임용	1	84,820	78,300	6,520	8.3%
인사관리	1	1,193,946	1,004,982	188,964	18.8%
지방공무원인사운영	1	640,400	772,591	△132,191	△17.1%
교원노사관리	3	227,644	232,916	△5,272	△2.3%
오디세이학교운영	4	649,102	571,934	77,168	13.5%
기초학력향상지원	3	3,235,172	572,003	2,663,169	465.6%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3	4,585,350	0	4,585,350	순증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	79,150	79,130	20	0.0%
중등수석교사제운영	3	686,136	737,926	△51,790	△7.0%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1	2,285,804	2,555,767	△269,963	△10.6%
방과후활동지원	1	4,563,450	4,426,150	137,300	3.1%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	13,526,600	13,509,120	17,480	0.1%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3	13,265,822	8,967,658	4,298,164	47.9%
영어체험교육지원	3	1,215,751	1,264,216	△48,465	△3.8%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1	36,396	0	36,396	순증
마이스터고지원	3	4,040,000	4,100,000	△60,000	△1.5%
맞춤형취업기능강화	1	1,345,945	0	1,345,945	순증
중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3	10,037,240	10,060,940	△23,700	△0.2%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3	63,493	0	63,493	순증
선진운동부육성	3	1,050,600	1,352,200	△301,600	△22.3%
문화예술지원	1	5,308,934	0	5,308,934	순증
청소년단체활동지원	3	547,800	52,950	494,850	934.6%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1	62,030	0	62,030	순증
학교안전망구축	3	1,143,400	1,289,616	△146,216	△11.3%
맞춤식진로교육	3	5,200,020	4,865,000	335,020	6.9%
초등돌봄교실운영	1	71,907,838	70,896,296	1,011,542	1.4%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3	32,162,941	31,107,826	1,055,115	3.4%
화장실개선	3	24,385,832	27,962,928	△3,577,096	△12.8%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3	166,230	167,010	△780	△0.5%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3	452,904	307,930	144,974	47.1%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1	365,820	404,500	△38,680	△9.6%
주민참여예산운영	4	85,500	87,390	△1,890	△2.2%
학교운영위원회	3	73,220	20,848	52,372	251.2%
계		206,593,593	189,412,597	17,180,996	9.1%

-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사업예산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도록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방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바, 정책 효과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함.

- 그러나 교육청은 금번 성인지 예산안 중 일부사업에서 성비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성과목표를 유지하도록 한다거나 (지방공무원인사운영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여성 비율, 성인지 예산안 74p), 국정목표인 “양성고용평등” 실현을 위해서 특정 성별의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거나(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성인지 예산안 100p/문화예술지원, 성인지 예산안 144p/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성인지 예산안 175p), 성과목표를 하향조정(화장실개선, 성인지 예산안 171p) 하는 등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신뢰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가령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성인지 예산안 180p)과 같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모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여성교원 직무연수 이수율로 명시하면서 성과목표를 오히려 하향 조정하도록 설정하는 등의 오류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청은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선정한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개별사업의 성과목표가 성평등 실현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교육청은 교육사업의 제반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선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운영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17)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34~47pp, 사업별 설명자료 5~14pp)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2,202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73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12] 지방재정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보통교부금	5,109,331	4,684,808	424,523	9.1%	5,109,331	-
특별교부금	110,947	88,117	22,830	25.9%	-	110,947
계	5,220,278	4,772,925	447,353	9.4%	5,109,331	110,947

① 보통교부금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18) 따라 정부(교육부)가 “내국세 20.46%의 97% 및 교육세 일

17)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는 [붙임1] 참고.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임.¹⁹⁾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19년도 보다 4,245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5조 1,093억 3천 1백만이 편성되었음(교육부,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지방교육재정과-6017, 2019.10.8.).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은 ①교직원인건비, ②학교·교육과정운영비, ③교육행정비, ④교육복지지원비, ⑤교육기관 등 시설비, ⑥유아교육비, ⑦방과후학교 사업비, ⑧재정결함보전, ⑨자체노력 수요(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 지원) 등으로 구분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수업료 및 입학금,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으로 산정되고 있음.²⁰⁾

19) 보통교부금은 시·도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포괄적 교부금임.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A×B)×C-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세목별 조세체계는 [붙임2] 참고.

[표13]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기본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자체노력 수요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2])	
측정항목	측정단위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인건비	교원수, 교원 증원 수 등	1.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통폐합 학교, 학생 수
2. 학교교육 과정 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 수 등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학교별 신설비 절감액
3. 교육행정비	학교,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등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
4. 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수급자 수 등	4.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건축연면적, 토지면적 등	5.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지방채 조기상환액
6. 유아교육비	유아, 교원, 유치원 수 등	6. 중등 직업교육학생 비중 확대 지원	학교 수
7.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급, 수급자 수, 교실 수 등		
8. 재정결함보전	원리금 상환액, BTL임대료		

-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의 51.1%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의 교직원인건비, 교육복지지원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등의 증가로 기준재정수입액의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법정전입금, 수업료및입학금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었음.

[표14]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측정항목	2020년 예정교부액	2019년 예정교부액	전년대비 증감액
보통교부금(A-B+C+D)		5,109,331	4,684,808	424,523
합계		9,066,131	8,982,290	83,841
기 준 재 정 수 요 액 (A)	1. 교직원인건비	6,320,483	6,036,597	283,886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1,537,044	1,598,232	△61,188
	3. 교육행정비	101,016	108,621	△7,605
	4. 교육복지지원비	233,408	214,984	18,424
	5. 학교시설비	613,947	691,959	△78,012
	6. 유아교육비	75,286	70,148	5,138
	7. 방과후학교사업비	90,648	86,699	3,949
	8. 재정결함보전	44,809	127,929	△83,120
	*자체노력수요	49,490	47,121	2,369

구 분	측정항목	2020년 예정교부액	2019년 예정교부액	전년대비 증감액
기 준 재 정 수 입 액 (B)	합계	3,956,800	4,302,415	△345,615
	1. 법정전입금	3,614,431	3,936,969	△322,538
	2. 수업료및입학금	242,304	266,898	△24,594
	3. 학교용지부담금	0	9,302	△9,30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0,065	89,246	10,819
	정정교부액(C)	0	4,933	△4,933
	지방채(D)	0	0	0

②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K-에듀파인운영지원 등 116개 사업에 1,109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2019년도 881억 1천 6백만원 보다 228억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²¹⁾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²²⁾ 따라 그동안 일방

21) 다만 교육청은 교육부가 통보한 특별교부금 사업들(국가시책사업) 중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체성이 부족하여 차후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 금번 본예산에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통보된 사업 중 일부를 편성하지 않았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사업 중 워킹그룹 구성·운영 3천3백만원 ②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 중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4천만원 ③ 유아교육 역량강화 사업 중 누리과정 개정 후속조치 1억7천만원 ④ 학생건강 및 안전 국가시책사업 중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예방 지원 2억 8백만원 ⑤ 특성화고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2천 6백만원 ⑥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 10억 4백만원 ⑦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사업 중 대입전형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21억 4천 3백만원과 지방교육재정 분석 1억 8천 6백만원 |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적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 추진으로 인해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켜왔으며,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의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음.

특히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²³⁾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특별교부금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청은 2018년부터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2017.9.26)을 수립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예산 편성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여 왔음.²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 24)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의 금액 중 3%를 해당재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음(예산안 총

[표 15] 2017~2020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²⁵⁾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예산액)	9,951,120	100.0%	10,912,569	100.0%	11,005,898	100.0%	9,972,986	100.0%
교부합계	204,291	2.1%	181,679	1.7%	211,225	1.9%	110,947	1.1%
국가시책사업	146,696	1.5%	107,749	1.0%	142,446	1.3%	110,947	1.1%
지역교육현안수요	49,106	0.5%	56,164	0.5%	47,689	0.4%	0	0.0%
재해대책수요	8,489	0.1%	17,766	0.2%	21,090	0.2%	0	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고 있는바,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령 신규사업, 대규모 재원(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교육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교육공무직의 추가 인건비 편성 등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업 중단 및 예산 반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국 고 보 조 금	141,811	24,529	117,282	478.1%		141.811

칙 제9조).

25) 2017~2018 결산기준, 2019~2020 예산(안)기준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보다 1,172억 8천 2백만원 이 증액된 1,418억 1천 1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6] 국고보조금 편성사업(사업별 설명자료 12p)

(단위: 천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2020년도 편성(안)
1	참 여 협 력 담 당 관	교육급여지원	12,990,405
2	초 등 교 육 과	초등돌봄교실 확충	2,010,000
3	체 육 건 강 문 화 예 술 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60,150
4	체 육 건 강 문 화 예 술 과	초등스포츠강사지원	2,015,683
5	체 육 건 강 문 화 예 술 과	학교흡연예방교육	3,535,381
6	학 교 지 원 과	고교 무상교육	120,900,000
합 계			141,811,619

- 국고보조금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 서 금번 예산안에는 교육급여지원(129억 9천만원), 초등돌봄교실 확충(20억 1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3억 6천만원), 초등스포츠 강사지원(20억 1천 6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35억 3천 5백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1,209억원)의 5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이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교육부, 2019.8.19.) 사업으로 2020년에는 무상교육 대상 이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 성되었음(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901, 2019.10.2.).

-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세입과목 설정은 2020년 예산안 제출기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처리가 지연되어 부득이 「2020년도 서울 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따라 국가 부담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2019.10.31. 의결) 재원분담 비율 등이 확정된²⁶⁾ 만큼 향후 교육부 훈령 등의 개정을 통해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세입과목의 조정이 예상되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른 국가부담분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유효기간 만료 후 국가 부담분의 축소 등에 따른 교육청 부담분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교육급여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전입되는 세입재원인바, 금번 예산안에는 2019년도의 175억 1천 2백만원보다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45억 2천 1백만원이 감소된 129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급여지원의 국고보조금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라 하겠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는 교육급여 재원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교육급여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9.8%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20.2%를 부담하도록 편성되었음.²⁷⁾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 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표17]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

분담주체	재원분담					
	2018		2019		2020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중앙정부 (교육급여보조금)	18,000	39.60	17,512	42.90	12,991	47.90
지방자치단체 (교육급여보조금)	12,000	26.40	11,674	28.60	8,660	31.90
소 계	30,000	66	29,186	71.50	21,651	79.80
교육청	15,397	34	11,629	28.50	5,488	20.20
총 계	45,397	100	40,815	100	27,139	100

- 다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교육급여보조금이 축소된 것은 2018년 결산결과 교육급여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67억 8천 9백만원으로(불용율 15%) 다소 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등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의 납부 대상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18] 2019~2020년 저소득층 가정 학생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세부사업 기준)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안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학비지원	7,771	22,411	좌동	△14,640	좌동
학기중평일 중식지원	7,624	17,677	17,366	△10,053	△9,74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15,469	20,239	19,424	△4,770	△3,955
인터넷통신비 지원	2,714	3,873	좌동	△1,159	좌동
수익자 부담경비지원	7,243	7,685	좌동	△442	좌동
교육급여지원	27,138	41,101	40,815	△13,963	△13,677
합 계	67,959	112,986	111,574	△45,027	△43,615

다)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특별회계전입금	549,314	575,899	△26,585	△0.05	-	549,314

-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265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한 5,493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중앙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와 시·도 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부담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누리과정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였음.
-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²⁸⁾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었음.
- 과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의 '무상교육'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어다는 점에서 어린이

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집 누리과정 소요액을 국가가(교육부·보건복지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었음.

-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여 지난 10월 31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²⁹⁾

[표18]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 구조 및 재원

정부 <일반회계> ↓ 교육부장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일반회계> ↓ 학부모	○재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 - 전입금: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 차입금: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 일시차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 - 내국세의 20.46%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u>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u>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7%, 특별교부금 3%로 구분됨
----------------------------------------------------------------------------------------------------	-----------------------------------------------------------------------------------------------------------------------------------------------------------------------------------------------------------------------------------------------

- 비록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지만 향후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여전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재원 분담에 대한 논란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없음.

29)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교육청 의견

교육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안에 찬성
기획재정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별다른 이견 없으나, 현행법 고려 3년 연장 검토
전북교육청	○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이 개정 필요, 전액 국고부담으로 보건복지부에 편성되어야 함. ○ 해당법은 현행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2019.12.31. 경과 후 일몰되어야 함.

[표19] 누리과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현황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제34조(무상보육) ·무상보육 대상을 영유아 전체로 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무상교육 대상자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로 함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무상보육 대상자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로 함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어린이집 누리과정 실시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

-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0] 2017~2020 누리과정 편성 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어린이집	3세	41,880	142,971	41,409	144,480	39,985	139,148	37,734	131,314
	4세	31,863	110,883	31,509	109,651	31,178	108,499	30,512	106,182
	5세	28,408	98,860	32,590	113,413	29,470	102,556	27,200	94,656
소계	102,151	352,714	105,508	367,544	100,633	350,203	95,446	332,152	
유치원	3세	22,910	63,294	22,942	63,315	22,661	62,642	19,206	54,504
	4세	30,967	87,053	30,040	81,841	30,230	81,790	27,199	75,342
	5세	33,517	88,432	33,891	90,798	30,946	81,264	32,158	87,316
소계	87,394	238,779	86,873	235,954	83,837	225,696	78,563	217,162	
총계	189,545	591,493	192,381	603,498	184,470	575,899	174,009	549,314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49~64pp, 사업별 설명자료 15~19pp)

[표21] 2017~2020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광역	2,914,634	3,096,678	3,165,942	3,356,792
기초	-	3,600	3,502	2,598
합계	2,914,634	3,100,278	3,169,444	3,359,390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9년도 보다 1,899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조 3,593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음.

가) 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시도세	1,355,391	1,267,922	87,469	6.9%	1,355,391	0
담배소비세	253,957	254,329	△372	△0.1%	253,957	0
지방교육세	1,596,312	1,492,337	103,975	7.0%	1,596,312	0
학부교담용지급	13,822	6,059	7,763	128.1%	13,822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0,065	89,246	10,819	12.1%	100,065	0
교육급여보조금	8,660	11,674	△3,014	△25.8%	0	8,660
계	3,328,207	3,121,567	206,640	6.6%	3,319,547	8,660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019년도 보다 2,066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조 3,282억 7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³⁰⁾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세입재원으로 2019년도 보다 1,039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5,963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2019년도 보다 874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1조 3,553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3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한 2,539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³¹⁾

- 이는 서울특별시가 지난 10월 16일 통보한(교육정책과-16069,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알림」)³²⁾ 최초 내시액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10월 28일 통보한(교육정책과-16593,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알림(변경)」) 변경내역에 따르면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 전입금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7개 세목
 -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31)

32) 2020년 법정전입금 및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행정협의회는 10월 10일에 개최되었음.

당초 내시된 금액과 933억 5천 8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특별시가 최초 내시액보다 보통세(시도세)는 446억 9천 3백만원, 지방교육세는 486억 6천 5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세입 추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시기 도래에 따른 예산편성의 촉박함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을 제출하였음.

[표22] 2020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비법정) 내역³³⁾

(단위: 천원)

세 목 구 분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 예정액(변경액)				기존 (당초액)	차 액	
	2020년 분	2018년 정산분	지방소비세 확대분	계			
법 정 전 출 금	보통세 (10%)	1,400,083,000			1,400,083,000	1,355,390,300	44,692,700
	지방교육세(100%)	1,568,362,000		76,615,000	1,644,977,000	1,596,312,000	48,665,000
	담배소비세(45%)	253,957,050			253,957,050	253,957,050	-
	소계	3,222,402,050	-	76,615,000	3,299,017,050	3,205,659,350	93,357,700
	학교용지부담금	13,821,862			13,821,862	13,821,862	-
비 법 정 전 출 금	조례상 전출금	53,300,000			53,300,000	53,300,000	-
	합 계	3,289,523,912	-	76,615,000	3,366,138,912		

-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등 부동산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경기 전망도 대일무역 분쟁 및 미중무역 분쟁 등의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무리하게 시·도세 및 지방교육세 규모를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세입을 확대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의 예측이 타당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는 교육청이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를 알림으로써 교육청의 세입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과 교육급여보조금 제외

예산이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

이처럼 서울특별시가 법정전입금에 대한 변경 내역을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 2일 전에서야 통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관 간 협력적 예산편성의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교육청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에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는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실무논의를 위한 인프라가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점은 예산편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나)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광역자치단체	31,183	47,877	△16,694	34.9%	3,977	27,206
기초자치단체	0	0	-	-	0	0
소계	31,183	47,877	△16,694	34.9%	3,977	27,206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 3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른35) 재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은 2019년도 보다 166억 9천 4백만원이 감소한 311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의 39억 7천 7백만원을 제외한 272억 6백만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교육지원 사업 20개 사업 중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소상공인 인식 개선 사업’을 제외한 17개 사업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 상기 제외된 3개 사업과 특별교육지원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경비 지원 총액 533억원 중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272억 6백만원을 제외

35)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한 상기 3개 사업과 특별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60억 9천 4백만원
은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되는 것으로서 이는 본예산안을 기
준으로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
산안상의 세입·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³⁶⁾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³⁷⁾

- 물론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나 특별교육지원사업은 교육비특별회
계 세출구조상 사업대상(학교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으로
인해 사업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재원을 교육청으로 전
출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³⁸⁾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이 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함으로써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등
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청은 법령이 정한 예산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23] 2018~2020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대비증감	2019년도 대비증감률
계	28,268	53,300	53,300	0	-
일반교육지원사업	25,706	48,550	48,836	286	0.6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7,744	7,139	7,139	0	-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265	5,239	5,239	0	-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300	1,300	0	-
3.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600	600	600	0	-

36)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7) 「2020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평생교육국 예산에는(920p) 전출금으로 53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38)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2020년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대비증감	2019년도 대비증감률
4.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100	-	-	0	-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	17,962	41,411	41,697	286	0.7
5.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미편성)	5,000	4,000	4,000	0	-
6.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400	-	-	0	-
7.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500	1,500	1,610	110	7.3
8. 유아교육 지원	975	975	610	△365	△37.4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512	1,512	1,512	0	-
10.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	1,100	1,100	0	-
11.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750	1,370	1,360	△10	△0.7
12. 문화예술특별교실 설치	-	1,080	1,080	0	-
13.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700	0	-
14.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3,400	3,400	0	-
15. 학교CCTV교체	1,535	1,535	1,535	0	-
16.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840	-	-	0	-
17. 서울형메이커스페이스운영	1,000	1,000	1,000	0	-
18.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250	1,410	1,410	0	-
19. 학교 체육관 건립(미편성)		14,900	17,500	2,600	17.4
20.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지원		3,000	3,000	0	-
21. 특성화고 드론과학실 및 드론교육원 조성		1,900	-	△1,900	△100.0
22.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179	1,200	21	1.8
23.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850	550	△300	△35.3
24. 소상공인 인식 개선 사업(미편성)	-	-	130	130	100.0
특별교육지원사업(미편성)	2,562	4,750	4,464	△286	△6.0

- 다음으로 비법정이전수입 중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의 「2020 서울특별시 예산(안)」 보통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8,158억 7천백만원이 증가한 14조 4,961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통보한 금번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는(미편성분 포함) 서울특별시의 보통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한 53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보통세 수입의 0.37%에

불과하여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인 0.6%의 약 절반 수준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0.02% 감소함으로 인해 상대적인 감소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표24] 2016년도~2019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서울시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본예산 규모	19,169,409	20,639,809	22,466,451	26,858,339
본예산 세입 중「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규모(A)	10,429,059	11,535,362	12,756,297	13,680,266
교육경비 보조금(B)	41,716	56,677	28,268	53,300
일반교육지원사업	37,544	50,909	25,706	48,550
특별교육지원사업	4,172	5,768	2,562	4,750
B/A × 100 = %	0.40%	0.49%	0.22%	0.39%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기준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기준액 최대치와 실제 지급액 차이	0	12,536	48,270	28,781

○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의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로 보이며³⁹⁾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가 교육청에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세수추계의 안정성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을 확정적으로 명기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65~72pp, 사업별 설명자료 20~23pp)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전입금)	9,899	6,695	3,204	47.9%	1,950	7,949

39) 2019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결과 알림(교육정책과-17047, 참석의원 전원 원안의결)

- 금번 민간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금(46억 9천 6백만원)과 교육금고(농협) 협력사업비(19억 5천만원), 공항공사 항공소음피해학교 지원금(31억 5천 5백만원)⁴⁰⁾,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3천만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수 부담금(6천 8백만원)을 합한 총 98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⁴¹⁾

[표25]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증장기 설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총 계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서울시교육청	6교	2,416	7교	3,155	10교	3,062	8교	2,355	5교	1,334	3교	469	29교	12,791

- 이중 ‘교육금고(농협) 협력사업비’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농협(주)과 금고 지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난 2016년 12월 22일 ‘공동지정 협력사업 이행 협약서’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9억 5천만원씩 총 7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한 바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금고 지정 약정에 따른 출연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금고 지정은행과는 3,015억원을, 2금고 지정은행과는 1,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는 등 약정기간 중 금고로부터 총 4,115억원을 출연받기로 약정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청이 농협(주)과 체결한 협력사업비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바, 교육청이 2020년에 새로운 금고 지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의 지정에 있어 공동지정 협력사업을 기존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0)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학교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교육청이 체결한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협약」(2019.9.5.)에 따른 사업비임.
 41)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은 [붙임3] 참고.

나. 자체수입(예산안 73~125pp, 사업별 설명자료 23~45pp)

(단위: 천원)

관	항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목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159,873,408	159,026,753	846,655	0.5
교수-학습활동수입			106,412,926	101,905,972	4,506,954	4.4
		기본적교육수입	104,308,326	99,494,298	4,814,028	
		입학금	53,300	58,028	△4,728	
		수업료	103,811,914	98,671,468	5,140,446	
		지난년도수업료	443,112	764,802	△321,690	
		선택적교육수입	2,104,600	2,411,674	△307,074	
		기숙사및급식	612,796	801,904	△189,108	
		평생학습수입	1,491,804	1,609,770	△117,966	
행정활동수입			5,321,044	5,498,245	△177,201	△3.2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321,044	5,498,245	△177,201	
		사용료수입	4,758,794	4,624,138	134,656	
		수수료수입	562,250	874,107	△311,857	
자산수입			15,261,694	7,989,331	7,272,363	91
		자산임대수입	451,656	431,068	20,588	
		임대료수입	451,656	431,068	20,588	
		자산매각대	14,810,038	7,558,263	7,251,775	
		토지매각	14,766,960	7,526,520	7,240,440	
		기타유형자산매각	31,990	23,465	8,525	
		무형자산매각	11,088	8,278	2,810	
이자수입			7,100,677	7,008,066	92,611	1.3
		이자수입	7,100,677	7,008,066	92,611	
		이자수입	7,100,677	7,008,066	92,611	
금융자산회수			350,000	16,302,176	△15,952,176	△97.9
		용자금원금회수	0	16,302,176	△16,302,176	
		용자금원금회수	0	16,302,176	△16,302,176	
		보증금회수	350,000	0	350,000	
		보증금회수	350,000	0	350,000	
기타수입			25,427,067	20,322,963	5,104,104	25.1
		제재금수입	731,015	786,445	△55,430	
		변상금	209,201	202,570	6,631	
		위약금	141,589	148,587	△6,998	
		연체료	120,825	125,288	△4,463	
		과태료	259,400	310,000	△50,600	
		기타수입	24,103,428	18,975,173	5,128,255	
		생산물매각대	1,500	1,500	-	
		그외수입	24,101,928	18,973,673	5,128,255	
과년도수입			592,624	561,345	31,279	
		과년도수입	592,624	561,345	31,279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19년 보다 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598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기본적교육수입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입학금 면제)로 인해⁴²⁾ 지난년도 수업료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업료가 지난해 보다 51억 4천만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19년도보다 48억 1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선택적교육수입은 기숙사및급식 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 8천 9백만원 감소하고 평생학습수입도 전년도 보다 1억 1천 8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3억 7백만원 감소한 21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 2019년 보다 1억 7천 7백만원 감소한 53억 2천 1백만원을 편성되었고, 자산임대수입은 4억 5천 2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산매각대는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중 토지의 매각 물량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7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148억 1천만원을 편성되었음.

그 밖에 이자수입은 71억원을 편성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로 3억 5천만원, 변상금, 위약금 등의 제재금수입으로 7억 3천 1백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생산물매각대 등의 기타수입은 241억 3백만원을,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의 과년도 수입은 5억 9천 3백만원을 편성되었음.

○ 자체수입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대비 1.6% 규모의 미비한 세입재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4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교육비특별회계는 근본적으로 의존재원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체수입 증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수입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을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적기 부과 등으로 인한 임대 수익 증대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신속한 부과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전년도이월금(예산안 137~141pp, 사업별 설명자료 51~53pp)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532,420,745	671,795,968	△139,375,223	△20.7
전년도이월금		532,420,745	671,795,968	△139,375,223	△20.7
	순세계잉여금	532,420,745	671,795,968	△139,375,223	△20.7
	순세계잉여금	532,420,745	671,795,968	△139,375,223	△20.7

-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5,324억 2천 1백만원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1,393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⁴³⁾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4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총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⁴⁴⁾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⁴⁵⁾

예산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상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세출예산의 불용이 발생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의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26] 2016~2020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본예산	319,104	311,863	506,772	671,796	532,421
추경예산	319,104	505,441	515,188	769,861	

- 이러한 점에서 [표26]에 나타난 교육청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4,523억 8천 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세입예산 평균 규모 8조 6,701억 4천 9백만원 대비 약 5.2%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금

44)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45)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번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예산 9조 9,729억 8천 6백만원 대비 약 5.3% 규모라는 점에서 지난 4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됨.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수년간의 본예산 편성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하는 것이 지양되는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에 (예산안 1,889p) 따른 불용추정액(6,287억 7천 1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이 재정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712,998	47.3%	4,449,289	263,709	5.9%	4,712,998	0	
	사립학교인건비	1,343,297	13.5%	1,138,622	204,675	18.0%	1,222,397	120,900	
	계	6,056,295	60.7%	5,587,911	468,384	8.4%	5,935,395	120,900	
경상비	기관운영비	29,757	0.3%	33,518	△3,761	△11.2%	29,757	0	
	학교운영비	공립	821,667	8.2%	745,354	76,313	10.2%	821,667	0
		사립	72,747	0.7%	69,492	3,255	4.7%	72,747	0
		소계	894,414	9.0%	814,846	79,568	9.8%	894,414	0
	계	924,171	9.3%	848,364	75,807	8.9%	924,171	0	
사업비	교육사업비	2,060,594	20.7%	1,937,965	122,629	6.3%	1,343,522	717,072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159,889	1.6%	129,358	30,531	23.6%	159,889	0
		일반시설	556,417	5.6%	561,890	△5,473	△1.0%	548,502	7,915
		급식시설	88,383	0.9%	80,405	7,978	9.9%	88,383	0
		소계	804,689	8.1%	771,653	33,036	4.3%	796,774	7,915
계	2,865,283	28.7%	2,709,618	155,665	5.7%	2,140,296	724,987		
지방채 및 BTL 상황	지방교육채 상환 등	13,318	0.1%	92,465	△79,147	△85.6%	13,318	0	
	BTL상환	103,919	1.0%	104,387	△468	△0.4%	103,919	0	
	계	117,237	1.2%	196,852	△79,615	△40.4%	117,237	0	
예비비 및 기타	10,000	0.1%	37,570	△27,570	△73.4%	10,000	0		
합계	9,972,986	100.0%	9,380,315	592,671	6.3%	9,127,099	845,887		

○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보다 5,92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9조

9,729억 8천 6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보다 4,683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6조 562억 9천 5백만원을 편성되었고 기관운영비 등 경상비는 전년보다 758억 7백만원이 증가한 9,241억 7천 1백만원을 편성되었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각각 2조 605억 9천 4백만원과 8,046억 8천 9백만원을 편성되었고 BTL 상환은 1,039억 1천 9백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은 133억 1천 8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 100억원을 편성되었음.

[표22] 2018~2020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성질별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추경까지	2020년 예산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522,362	4,696,892	4,712,998
		사립학교인건비	1,120,833	1,159,589	1,343,297
		계	5,643,195	5,856,481	6,056,295
	기관운영비		43,243	34,055	29,757
	학교 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746,756	751,802	821,667
		사립학교운영비	67,445	95,911	72,747
		계	814,201	847,713	894,414
	복지사업비		1,383,369	1,477,285	1,354,253
	지방교육채 및 BTL		431,001	980,813	117,237
	계		8,315,009	9,196,347	8,451,956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 무기직제외)		727,015	727,359	706,341
	시설비	급식시설	89,102	102,692	88,383
		일반시설	532,713	738,903	556,417
		학교신증설	210,891	222,757	159,889
		계	832,706	1,064,352	804,689
	예비비		10,780	17,570	10,000
계		1,570,501	1,809,281	1,521,030	
총계		9,885,510	11,005,628	9,972,986	

-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복지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및 BTL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84.7%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표23] 2017~2020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대비 시설사업비(A/B)
2017	8,147,725	451,458	1,383,571	32.6
2018	9,151,267	712,890	1,949,224	36.6
2019	9,380,315	771,653	1,937,965	39.8
2020	9,972,986	804,689	2,060,594	39.1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8.7%인 2조 8,652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226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2조 605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학교신증설 등의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330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8,046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시설사업비의 편성규모는 2017년부터 금번 예산안까지 교육사업비 대비 약 37% 수준으로 편성됨.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와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등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비 비중의 증가로 전체 사업비 중 경직성 사업비가 매년 확대됨에 따른 것임.

[표24] 교육복지사업비 현황4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인	적 자 원 운 용	28,400	1.4	27,361	1,039	3.8	28,182	218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502,119	24.4	504,931	△2,812	△0.6	414,145	87,974
교	육 복 지 지 원	1,354,253	65.7	1,259,641	94,612	7.5	742,116	612,137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40,834	2.0	27,562	13,272	48.4	36,209	4,625
평	생 교 육	27,906	1.3	27,730	176	0.6	26,144	1,762
직	업 교 육	704	0.0	742	△38	△5.1	704	0
교	육 행 정 일 반	106,378	5.2	89,998	16,380	18.2	96,022	10,356
합	계	2,060,594	100	1,937,965	122,629	6.3	1,343,522	717,072

46) 보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붙임4] 교육사업비 구성 참고.

○ 다만, 이와 같은 특정 사업영역의 편중·고착화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청은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영역이 무리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25]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현황⁴⁷⁾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비교증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학	비	126,826	9.4	111,524	15,302	13.7	81,227	45,599
방	과	99,019	7.3	101,906	△2,887	△2.8	96,169	2,850
급	식	409,623 ⁴⁸⁾	30.3	354,575	55,048	15.5	409,623	0
정	보	2,714	0.2	3,873	△1,159	△29.9	2,714	0
교	육	54,765	4.0	52,883	1,882	3.6	53,675	1,090
누	리	550,008	40.6	577,146	△27,138	△4.7	694	549,314
교	과	111,298	8.2	57,734	53,564	92.8	98,014	13,284
합	계	1,354,253	100	1,259,641	94,612	7.5	742,116	612,137

47) ○ 2017~2020 교육사업비 대비 복지사업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교육사업비	1,383,571	1,949,224	1,945,019	2,060,594
교육복지	903,735	1,262,435	1,269,263	1,354,253
교육사업비 대비 교육복지비율	65.3%	64.8%	65.3%	65.7%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의 지연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4개 부서로 산재되어 편성되어 있음(총 2,546억원).

무상교육 지원 대상	사업부서	구 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공립고·공립특성화고·방통고·각종학교 수업료	교육재정과	교육사업비	기타교육비지원	고교무상교육	712억원(특교 212억원)
공립고·방통고·공립 각종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기타)운영비	212억원
사립고·사립특성화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지원과	학교운영비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500억원(국고보조금 1,209억원)
공·사립고 교과서비	교육혁신과	교육사업비	교과서지원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122억원

나. 2019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 본예산	2019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명시이월 예상액	2020년 예산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6,235	119	34,832	9,170	25,662	26.3	0	9,896
기타교육비지원	348	5,032	17,880	7,624	10,256	42.6	0	71,473
학교급식환경개선	80,405	22,288	169,475	84,244	85,231	49.7	21,885	88,38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62,241	166,480	853,128	412,706	440,422	48.4	46,540	476,507
학교신증설	129,358	93,399	352,489	172,665	179,824	49.0	49,694	159,889
계	678,587	287,318	1,427,804	686,409	741,395	43.2	118,119	806,148

- 교육청은 2019년도 10월 현재 집행율이 저조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기타 교육비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의 경우(평균 집행률 43.2%) 전년도 보다 1,275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한 8,061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히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의 시설사업비의 경우 평균 집행률이 49%에 불과하고, 동 세부사업들의 미집행액은 전체 미집행액 7,413억 9천 5백만원의 95%인 7,054억 7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동 세부사업들은 예산현액 대비 약 8.5%인 1,181억 1천 9백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음.⁴⁹⁾
- 이와 같이 시설사업비의 경우 재원의 교부시기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비 예산을 전년대비 18.8%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은 자원확보에 치중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증액 편성의 필요성 등 재정운

48) 무상급식 3,972억 4천 9백만원 포함.

49) 실제로 금번 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특별교부금 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된 사업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설사업이 설계지연, 공사지연, 다른 사업과의 통합발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명시이월을 요청받은 상황임.

용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 예산 편성의 문제

1) 사업 개요

-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16개 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법제심의위원회 등 9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정수(명)	2019		2020 예산안
			회의개최 수	예산	
1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11	2	4.2	4.1
2	감사자문위원회	6	2	1.7	2.3
3	공익제보위원회	11	2	4.8	3.3
4	공직자윤리위원회	11	2	6.9	6.9
5	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13	1	-	-
6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7	9	-	-
7	공적심사위원회	7	2	-	-
8	기록물평가심의회	5	0	0.6	0.6
9	민원조정위원회	7	0	1.9	1.8
10	보안심사위원회	8	2	-	-
11	정보공개심의회	7	2	2.4	4.7
12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19	4	12.9	12.9
13	후생복지심의위원회	7	2	0.4	0.6
14	교육안전위원회	17	3	7.5	8.9
1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22	0	8.0	7.9
16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11	1	6.1	6.0
17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10	1	38.1	37.5
18	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	2	5.8	5.7
19	재정투자심사위원회	15	5	12.9	18.6
2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	7	28.8	28.4
2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2	1	5.8	5.1
2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12	1	2.1	2.1
23	교육소청심사위원회	16	3	10.2	8.8
24	법제심의위원회	7	10	0.7	0.7
25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14	2	2.8	2.0
26	제안심사위원회	7	0	2.8	2.6
27	행정심판위원회	50	15	61.7	81.7
28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14	1	14.2	14.2
29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34	2	10.0	6.6
30	학교협동조합민관협의회	10	2	3.4	3.3
31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5	1	3.9	2.8

연번	위원회명	위원 정수(명)	2019		2020
			회의개최 수	예산	예산안
32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7	4	4.8	4.8
33	생활임금위원회	7	1	1.5	1.4
34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5	1	4.2	2.8
35	서울특별시혁신학교운영위원회	15	3	7.4	7.4
36	영재교육진흥위원회	15	1	3.5	4.6
37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11	4	12.5	12.5
38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4	1	4.2	2.8
39	유아교육위원회	15	1	2.5	2.3
40	교원능력개발평가평가관리위원회	10	2	1.5	1.5
4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9	5	3.9	4.0
4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12	1	2.8	2.8
43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7	5	2.8	2.8
44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5	1	4.0	2.8
45	교권보호위원회	9	5	3.6	3.6
46	교원양성위원회	9	0	0.5	0.5
47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7	1	-	-
48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6	1	-	-
49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7	1	11.0	11.0
50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9	8	29.8	29.8
51	교육과정위원회	19	0	1.8	1.8
52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15	1	3.0	3.2
53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15	1	4.0	2.8
54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7	1	0.4	0.4
55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11	1	2.7	3.4
56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14	2	4.0	2.8
57	문해교육심사위원회	11	2	3.3	3.3
58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10	1	1.0	1.0
59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15	4	4.3	4.3
60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5	1	8.0	8.0
6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3	9	6.0	6.0
62	학력심의위원회	7	8	5.9	6.0
63	학생인권위원회	19	4	11.0	12.0
64	학생징계조정위원회	7	14	21.7	22.6
65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5	1	4.0	4.0
66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11	2	-	-
67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5	9	26.0	23.0
68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5	1	-	5.9
69	학교급식위원회	15	1	6.3	4.4
70	학교보건위원회	10	1	0.8	0.8
71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9	0	1.8	-
72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11	0	1.8	1.8
73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15	3	3.6	1.5
74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13	1	-	1.1
75	교명제정심의위원회	6	3	1.8	1.8
76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9	0	-	1.0
77	특성화중학교지정운영위원회	11	0	-	1.2
78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11	1	-	1.2
79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10	0	7.9	7.3
80	계약심의위원회	7	4	3.6	3.6
81	공유재산심의회	9	2	3.6	1.5
82	서울특별시교육청신청사및연수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1	2.2	1.8

연번	위원회명	위원 정수(명)	2019		2020 예산안
			회의개최 수	예산	
83	개축심의위원회	8	2	0.3	-
8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15	1	8.1	8.1
85	기술자문위원회	15	6	18.0	18.0
86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11	2	-	-
87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11	0	-	-
88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2	1.4	1.7
89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11	2	2.3	1.1
9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9	1	2.6	3.3
91	사학정책자문위원회(미구성)	0	0	-	-
평균 또는 합계		12.3	2.5	534.2	549.2

- 금번 예산안의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4천 9백만원으로 작년 보다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교육청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2019년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2.5회로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회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연간 회의 개최 빈도가 2회 미만인 위원회가 45곳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실제 위원회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청은 기능면에서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각종 국외연수 내실화 필요(사업별 설명자료 110p, 122p, 195p, 321p, 333p, 399p, 468~469pp, 535p, 538p, 550p, 608p, 616p, 642p, 654p, 738p, 829p, 842p, 845p, 928p, 976~979pp, 995p, 1100p, 1196p, 1338p, 1390p, 1583p, 1683p, 1850p, 1886p, 1908p, 1921p, 2028p, 2221p, 2348p)

1) 사업 개요

- 교육청은 선진 교육정책 체험과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2020년에도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국외연수 등 40개 사업의 국외연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⁵⁰⁾

2) 예산안

- 금번 예산안의 본청 및 직속기관 국외연수 사업 예산은 총 40개 사업에 27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국외연수(교육부 주관), 청렴도 우수국가 국외연수,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담당자 국외연수(교육부 주관),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사합동 국외연수(행정안전부 주관), 교실혁신 사례탐구 국외연수, 한중언어·문화체험단운영과 교육환경보호제도 담당 국외연수(교육부 주관) 등의 7개 사업의 2억 1천 2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세부적인 연수사업 내역은 [붙임5] 참고).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외연수 사업은 외국의 선진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여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교육청의 국외연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어 있고, 국외연수 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체험과 탐구보다는 유명 관광지 방문 등의 외유성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50) 2020년도 국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내역(본청, 직속기관) [붙임5] 참고

- 일례로 교육청의 2019년 학교공간혁신 국외연수단(단장 김원찬 부교육감)의 국외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동 연수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학교공간 구성과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보고 교육청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어떻게 이를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동 연수의 경우 8일간 공식일정 중 학교공간혁신과 관련된 학교방문은 단 2곳뿐이고 이 또한 1시간정도의 짧은 방문에 그치는 등 일정의 대부분이 성당, 궁전, 광장 등 유명 관광지 위주로 계획되었음.

결국 당초 교육청이 동 국외연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과 창의적 교육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와 교실환경구축 방향성 모색’은 어디에도 없고 문화탐방 위주의 외유성 여행으로 변질되어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도 도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처럼 교육청 대부분의 국외연수가 문화탐방 내지는 문화시찰이 연수 일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최초 연수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공무국외여행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국외연수가 공무원의 외유성 여행을 위한 낭비적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¹⁾
- 따라서 교육청의 국외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7명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서울특별시의회처럼 9명으로 하고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⁵²⁾

51) 서울시정일보, 혁신학교 교원 해외연수 ‘널널한 스케줄과 와인 만찬’, 인헌고 그 교사도 함께, 2019.11.08., 참고.

5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

마.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사업별 설명자료 339~359pp)

① 사업 개요

- 학교운영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부되는 예산 중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상적 경비로써 총액으로 교부되는 경비임. 현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에서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고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21,667,517	745,354,469	751,802,294	76,313,048	69,865,223	
학교기본운영비	676,221,262	613,257,513	618,272,629	62,963,749	57,948,633	· 혁신학교운영비(복 적사업비에서 전환) · 무상교육확대
학교기타운영비	145,446,255	132,096,956	133,529,665	13,349,299	11,916,590	

- 금번 예산안의 학교기본운영비는 2019년 보다 629억 6천 4백만만원이 증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의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가한 6,762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학교기타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33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1,454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⁵³⁾

[표26] 학교운영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공립	821,668	745,354	76,314	10.2%	-기본운영비확대 -학교신설 -혁신학교운영비(목적사업비에서전환) -무상교육확대(고3→고2,3)
사립	72,747	69,492	3,255	4.7%	- 기본운영비 확대
합계	894,415	814,846	79,569	9.8%	

○ 금번 학교운영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210억 5천 3백만원, 학교기타운영비로 6천 9백만원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이나 학급수, 학생수 등과 같은 학교의 기본적인 여건과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표27] 2017~2020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직접교육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기본운영비 ⁵⁴⁾	통합사업비(직접교육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직접교육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직접교육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직접교육비)
공립	655,169	27,635	613,258	16,159	583,328	12,321	562,109	25,582
사립	69,083	5,292	65,794	5,443	63,764	4,813	59,000	3,166
합계	724,252	32,927(4.5%)	679,052	21,602(3.2%)	647,092	17,134(2.6%)	621,109	28,748(4.6%)

※ 학교기본운영비=①공통경상운영비+②개별경상운영비(통합사업비, 통합인건비)

53) 금번 예산안은 교원연구비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의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으로 727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별 설명서 1891~1895pp).

54) 금번 예산안의 기본운영비에는 교육공무직(14개 직종) 인건비가(공통경상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교육실무사 5개 직종과 통합인건비로 지원되는 9개 직종) 포함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1,574억원임.

- ☞ ①공통경상운영비 : 학교급별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따라 산정
- ☞ ②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통합인건비의 경우, 사립은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
- ※ 직접교육비 규모 작성 자료 : 개별경상운영비 중 통합사업비(학교별 또는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교부되는 사업비) 규모로 작성함.

○ 다만 금번 예산안의 학교기본운영비 중 직접교육비의 비중을(329억 2천 7백만원) 살펴보면 [표27]과 같이 직접교육비 비중이 4.5% 수준으로 작년도 3.2%보다 증가된 것이라 하겠으나,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목적사업비의 학교기본운영비로의 통합 등으로 인해 동 사업비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동 경비의 재원구성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⁵⁵⁾

○ 다음으로 금번 예산안의 학교기타운영비에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으로 작년 보다 2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72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동 사업에는 교육청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⁵⁶⁾

다만 동 보장방안에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도 포함되어 있고 금번 예산안에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사업 등은 학교기타운영비가 아닌 중등교육과 소관의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이라는(45억 8천 5백만원)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음.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동일한 목적의 학교회계 전출 사업비를 이원화시킴으로써 예산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중등교육과의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도 예산담당관 소관의 학교기타운영비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55) 교육청은 학국교육개발원의 2005년, 2011년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식으로 기본운영비를 산출하고 있음.

56) 현재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중앙일보, 조희연 서울교육청 접거한 전교조 “기초학력평가 철회”, 2019.9.20., 참고).

나) 인건비(사업별 설명자료 375~380pp, 527p, 1947~1955pp)

① 사업 개요

- 금번 예산안의 인건비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존에 학교운영비(정원관리 대상 교육공무직 외)로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항목이 신설되어 이를 사업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으나 급식종사자(조리종사원), 과학교육센터 업무보조원 등과 같이 사업성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음.

②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증감률	비고	
공	교원 인건비 (42,722명)	보수	3,048,591	2,963,339	85,252	2.9%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757,950	649,793	108,157	16.6%	○명예퇴직 인원 : 1,077명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3,806,541	3,613,132	193,409	5.4%	
교육	전문직 인건비 (532명)	보수	46,575	42,304	4,271	10.1%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11,116	9,247	1,869	20.2%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57,691	51,551	6,140	11.9%	
립	지방 공무원 인건비 (6,924명)	보수	400,513	382,244	18,269	4.8%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104,358	91,870	12,488	13.6%	○명예퇴직 인원: 70명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504,871	474,114	30,757	6.5%	
공무원인건비 (50,178명)		4,369,103	4,138,797	230,306	5.6%		
계약제 교원 인건비 (4,182명)	보수	218,877	201,676	17,201	8.5%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45,525	39,211	6,314	16.1%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264,402	240,887	23,515	9.8%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742명)	보 수		12,076	11,410	666	5.8%	○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1일: 86,800원)
	법정부담금 등		20,834	14,799	6,035	40.8%	○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처우개선비		41,399	37,938	3,461	9.1%	○ 근속수당 및 상여금 인상
	장애인고용 의무제운영		5,183	5,458	△275	△5.0%	
	소 계		79,492	69,605	9,887	14.2%	
	근로자인건비 (4,924명)		343,894	310,492	33,402	10.8%	
	계(55,102명)		4,712,997	4,449,289	263,708	5.9%	
사 립	교원 인건비 (15,088명)	보 수	936,183	890,595	45,588	5.1%	○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원 증가
		법정부담금 등	100,012	97,153	2,859	2.9%	○ 명예퇴직 인원: 350명 ○ 법정부담액 소요액 증가
		소 계	1,036,195	987,748	48,447	4.9%	
	사무직원 인건비 (1,593명)	보 수	72,220	70,246	1,974	2.8%	○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등	7,665	7,597	68	0.9%	○ 명예퇴직 인원: 10명
		소 계	79,885	77,843	2,042	2.6%	
	교직원성과상여금		61,575	60,053	1,522	2.5%	
	교직원맞춤형복지비		15,613	12,978	2,635	20.3%	○ 기본점수 150포인트 인상
	고교무상교육지원		150,030	-	150,030	순증	○ 사립고 2,3학년 무상교육지원
	계(16,681명)		1,343,298	1,138,622	204,676	18.0%	
합 계(71,783명)		6,056,295	5,587,911	468,384	8.4%		

- 금번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 명예퇴직 인원 증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의 상승 요인이 반영되어 전년도 보다 4,683억 8천 4만원이 증가한 6조 562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0.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립학교 교원 인건비가 3조 8,065억 4천 1백만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76억 9천 1백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5,048억 7천 1백만원을 편성되었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644억 2백만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794억 9천 2백만원, 근로자인건비가 3,438억 9천 4백만원 그리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으로 1조 3,432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⁵⁷⁾

57) 교육부 산정 총액인건비와 교육청 편성 인건비 비교는 [붙임6] 참고.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28] 2017~2019년 인건비 결산 내역 및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2017	정규직	교원인건비	3,567,553	3,547,435	20,118	0.5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0,071	47,076	2,995	5.98%	
		지방공무원인건비	454,762	447,760	7,002	1.54%	
		소계	4,072,386	4,042,271	30,115	0.74%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22,017	213,576	8,441	3.80%	
		계약제직원인건비	6,152	4,944	1,208	19.64%	
		소계	228,169	218,520	9,649	4.23%	
	공립 계			4,300,555	4,260,791	39,764	0.92%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065,183	1,054,920	10,263	0.96%	
공사립 총계			5,365,738	5,315,711	50,027	0.93%	
2018	정규직	교원인건비	3,735,111	3,639,638	95,473	2.5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2,236	49,052	3,184	6.10%	
		지방공무원인건비	474,236	456,446	17,790	3.75%	
		소계	4,261,583	4,145,136	116,447	2.73%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47,112	223,306	23,806	9.63%	
		계약제직원인건비	13,677	9,247	4,430	32.39%	
		소계	260,789	232,553	28,236	10.83%	
	공립 계			4,522,372	4,377,689	144,683	3.20%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120,833	1,104,396	16,437	1.47%	
공사립 총계			5,643,205	5,482,085	161,120	2.86%	
2019 (예상)	정규직	교원인건비	3,818,149	3,694,069	124,080	3.2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4,980	52,182	2,798	5.09%	
		지방공무원인건비	493,604	471,926	21,678	4.39%	
		소계	4,366,733	4,218,177	148,556	3.40%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46,310	239,540	6,770	2.75%	
		계약제직원인건비	83,849	82,500	1,349	1.61%	
		소계	330,159	322,040	8,119	2.46%	
	공립 계			4,696,892	4,540,217	156,675	3.34%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159,859	1,144,543	15,316	1.32%	
공사립 총계			5,856,751	5,684,760	171,991	2.94%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불용액은 1.611억 2천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86%이며 이는 2017년 0.93%보다 1.93% 높은 수치임.

특히 2017년부터 공립 인건비의 불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추계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하여(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지난 10월 21일 공통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에 대한 집단교섭(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은 완료하였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교육복지전문인력 등 공통의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⁵⁸⁾ 대한 보충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9] 2018년도 교육공무직 인력운영 현황(2019.4.1기준)⁵⁹⁾

(단위: 명, %)

구분	무기계약 (A)	기간제				총 인원 (F=A+E)	무기계약 전환률 (G=A/F-B-D)×100	
		1년미만 (기간미도래) (B)	1년이상 (전환대상) (C)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D)	소계 (E=B+C+D)			
공립	유	1,361	63	-	10	73	1,434	100
	초	8,561	1,990	-	1,288	3,278	11,839	100
	중	3,731	664	-	56	720	4,451	100
	고	1,324	464	-	65	529	1,853	100
	특수	241	59	-	19	78	319	100
	각종	36	17	-	0	17	53	100
	기관	623	437	-	1	491	1,114	100
	계	15,877	3,694	-	1,492	5,186	21,063	100
사립	초	286	152	-	202	354	640	100
	중	597	227	-	199	426	1,025	100
	고	1,245	782	-	492	1,274	2,519	100
	특수	349	67	-	59	126	475	100
	각종	25	16	-	9	25	50	100
	계	2,502	1,244	-	961	2,205	4,709	100
	합 계	18,379	4,938	-	2,453	7,391	25,772	100

58) 2019년 집단임금 보충교섭 직종 및 요구안은 [붙임 7] 참고.

59)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만55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은 [붙임8] 참고.

[표31] 2017~2020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내역(2019.10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급	임금유형1 (상시근무자)	1,787,670원	1,834,140원	1,867,150원	2019.10~ 1,967,150원	2,023,000원
	임금유형2 (방학중비근무자)	1,601,090원	1,642,710원	1,672,270원	2019.10~ 1,772,270원	1,823,000원
	인상률	3.5% ↑	2.6% ↑	1.8% ↑		2.8% ↑
처우개선 수당	근속수당	5만(근속 3년)~ 35만(근 속18년)	2017.10~ 3만(근속1년)~ 60만(근속20년)	2018.11~ 3.25만(근속1년)~ 65만(근속20년)	2019.10~ 3.4만(근속1년)~ 68만(근속20년)	3.5만(근속1년)~ 70만(근속20년)
	급식비	월8만원	월13만원			
	명절휴가비 (설/추석)	연100만원				
	정기상여금	연60만원	연90만원			
	교통보조비	월6만원			2019.10~ 월10만원(기본급으로산입)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 직계존비속 2만원 / 셋째자녀 이하 5만원 또는 10만원	2017.10~ 배우자 4만원 / 직계존비속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 셋째자녀 이하 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 당	분기별 465,330원한 도	분기별 467,080원한도	분기별 469,080원한도	분기별 480,000원한도	
	위험근무수당 (조리종사원)	월5만원				
	조리사 자격가산수당 (조리사)	기본급 5%				
	면허가산수당 (영양사)	월83,500원	2019.3~ 월92,000원			
	직무관리수당 (영양사)	월5만원				
	특수업무수당 (사서)	월2만원(자격증 소지자)				
	행정업무책임수 당 (전일제초등돌봄 전담사)	-			월3만원	
	생활임금	시급8,040원 (12.5% ↑)	시급10,000원 (24.4% ↑)	시급10,300원 (3.0% ↑)		시급10,850원 (5.4% ↑)

다)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사업별 설명자료 451p)

① 사업 개요

- 학교협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서부터 교육·연수, 홍보, 기관 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94,930	146,047	좌동	48,883	좌동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159,150	105,447	좌동	53,703	좌동	◦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 (프로그램 추가)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협력 체계 구축 강화	35,780	40,600	좌동	△4,820	좌동	

-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보다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1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번 예산안 중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동 사업비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비용임.

- 동 센터는 2017년 3월 1일 설치되어 기간제 교육공무직 2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의 근거없이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음.

이러한 문제로 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후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⁶⁰⁾ 따라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바,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 편성여부는 상기 2안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겠음.

- 참고로 현재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32개의 각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교육복지센터와 Wee센터를 제외한⁶¹⁾ 다문화, 특수교육, 평생교육, 대안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요구하는 센터의 경우에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⁶²⁾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60)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1) 현재 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은 지역교육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꿈세움Wee센터 운영의 3가지 사업뿐임.

62) 교육청의 각종 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 9] 참고.

라) 서울교육공론화사업(사업별 설명자료 510p)

① 사업 개요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공론화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⁶³⁾ 서울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를 중심으로 연간토론 주제를 상정하여 서울교육정책을 검증·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19년 7월 30일부터 시작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⁶⁴⁾ 현재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임.⁶⁵⁾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642,518	2,591,056	좌동	51,462	좌동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721,480	786,600	좌동	△65,120	좌동	◦ 임원 직무연수 미실시
서울교육공론화사업	361,864	400,960	좌동	△39,096	좌동	◦ 총액 예산제로 인한 감액
원탁운영	102,440	120,200	좌동	△17,760	좌동	◦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사업 축소
전환기 학부모교육 운영	237,162	237,178	좌동	△16	좌동	
학부모교육지원	263,032	-	좌동	263,032	좌동	◦ 학부모리더 교육 신규 사업 편성 ◦ 특별교부금 감액사 업을 자체예산으로 편성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930,520	946,420	좌동	△15,900	좌동	◦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사업 축소
학조부모교육 운영	26,020	5,988	좌동	20,032	좌동	◦ 운영 학교 확대 (5교→20교)
학부모 교육 콘텐츠 개발	-	29,160	좌동	△29,160	좌동	◦ 총액 예산제로 인한 감액
학부모대학 운영	-	64,550	좌동	△64,550	좌동	◦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사업 폐지

63)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이 소관 사무임.

64) 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 ‘두발 및 복장 등 학교 공론화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데일리, 서울 중고교 10곳 중 9곳 ‘두발 길이 자유’... 7곳은 염색파마 허용, 2019.10.1., 참고)

65) 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학원 일요일휴무제 속의 민주주의 공론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이후 9월 27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했고,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10월 26일에는 1차 숙의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1월 9일 2차 숙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예산안에는 작년 보다 3천 9백만원 감소한 3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토론 등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의 도입여부, 방향성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이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교육정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교육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는 이른바 정책 공론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또한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책·안전기획관의 정책조정 팀에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사업별 설명자료 251p)가 편성되어 있는바, 동 사업 역시 서울교육정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가, 시민,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를 통한 발표와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육공론화사업과 그 취지와 목적 등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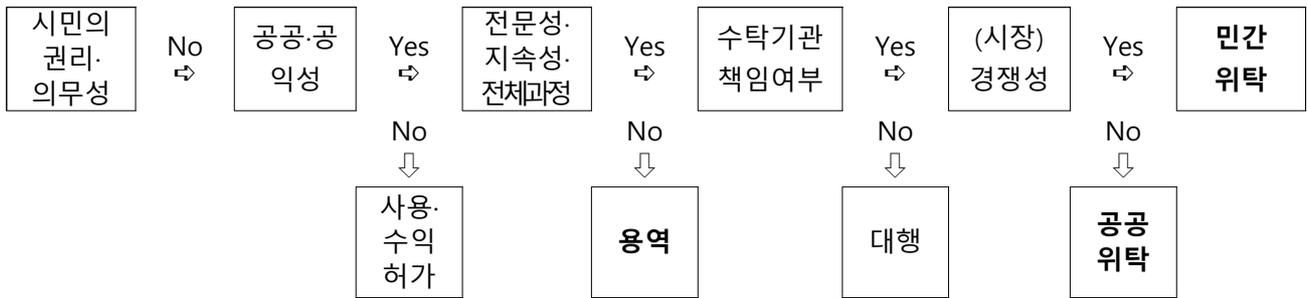
더욱이 서울교육공론화사업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공론화용역위탁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설문조사, 간담회,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포함한 포괄위탁방식의 사업으로 예상된다는 점,

동 사업이 ‘용역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공위탁, 민간위탁, 용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4.8)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용역위탁’이라는 혼용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32] 민간위탁과 유사개념(공공위탁, 용역)구분 기준⁶⁶⁾

순	판단 기준	분석	구분
1	■ 전문성, 지속적 사무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인가?	- 전문성 O·지속성 O → 민간위탁 검토 - 전문성 X·지속성 X → 용역	용역
2	■ 전체적 사무 -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인가?	- 전체적 O → 민간위탁 검토 - 부수적·일부 → 용역	
3	■ 경쟁 가능성 - 수탁 기관 선정 시 경쟁 원리가 적용 가능한가(수탁 기관이 공공기관인가)?	-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 검토 - 경쟁원리 불가 → 공공위탁 (법정위탁, 지정, 고시위탁)	공공위탁

※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



○ 한편 교육청은 상설, 비상설의 각종 지원단, 평가단, 센터, 협의회 등의 (87개) 기구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⁶⁷⁾ 기능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각종 기구 등을 통·폐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예산을 중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의 외부(전문가, 시민, 학생, 학부모 등)참여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6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서울특별시, 2014. 8.), 2016 3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6) 참고.

67) [붙임 10] 참고.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 정책 중 갈등유발 요인이 내포된 사업에 대해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처럼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공론화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방법으로 동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교육정책국

가) 자유학기(학년)제 사업 관련(사업별 설명자료 343p, 637p, 640p, 646p, 1395p)

① 사업 개요

- 자유학기(학년)제는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개발 지원하여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체계적인 진로탐색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서울시교육청의 자유학기(학년)제는 2016년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자유학기제(1학년 학기 중 1개 학기 선택), 자유학년제(1학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자유학기·자유학년 이후 일반학기 중 선택)의 3개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전체 계	4,854,260	12,402,600	12,452,600	△7,548,340	△7,598,340	
자체예산 계	452,260	1,113,600	1,163,600	△661,340	△711,340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자체예산)	-	957,500	1,007,500	△957,500	△1,007,500	◦ 교육부 특별교부금 ⇒ 기타운영비 전환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자체예산)	209,840	73,800	좌동	136,040	좌동	◦ 교육부 한시사업 종료로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20,920천원 X 11청)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자체예산)	242,420	27,300	좌동	215,120	좌동	◦ 교육부 한시사업 종료 로 연구학교 운영 지 원 (10,000천원 X 2 교)
교육지원청 지원 (자체예산)	-	55,000	좌동	△55,000	좌동	◦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사업 종료
특별교부금 계	4,402,000	11,289,000	11,289,000	△6,887,000	△6,887,000	
교원자유학년(학기) 수업지원(특별교부금)	18,000	136,000	좌동	△118,000	좌동	◦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 소
자유학년제확대운영 학교지원(특별교부금)	4,094,000	10,830,000	좌동	△6,736,000	좌동	-
특수학교자유학기.학 년제운영(특별교부금)	290,000	323,000	좌동	△33,000	좌동	◦ 특별교부금 본예산 편 성

- 금번 예산안의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예산은 전년도 보다 75억 4천 8백만원 감액된 48억 5천 4백만원이 편성됨.

감액의 주된 원인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인 ‘자유학년제확대운영학교지원’ 사업이 67억 3천 6백만원 대폭 축소되고, 교육청 자체예산인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예산 9억 5천 8백만원이 자체목적사업 예산이 아닌 학교기타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임(사업별 설명자료 343p, 57억 7천 5백만원).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의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자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11억 1천 4백만원) 보다 6억 6천 1백만원 감액된 4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됨. 감액의 주된 원인은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예산 9억 5천 8백만원이 자체목적사업 예산이 아닌 학교기타운영비로 정책사업구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표33] 자체예산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
세부사업	교육과정운영	학교운영비지원	-
세세부사업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학교기타운영비	-
담당조직	교육혁신과	예산담당관(학교회계팀)	-
예산편성액	957,500	5,775,000	◦ 사업목이 변경되면서 48억 1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됨.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타운영비로 사업구분을 변경하면서 ‘(단위 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예산을 기존의 9억 5천 8백만원에서 48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57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자체 예산은 2019년 11억 1천 4백만원에 비해 51억 1천 3백만원 증액된 62억 2천 7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표34] 참고).

- 반면,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은 전년도 112억 8천 9백만원보다 68억 8천 7백만원 감액된 44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사업은 2016년에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이며 이후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교육부 차원에서 동 사업 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동 사업비를 학교기타운영비로 편성하면서 자체예산 비중을 높인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원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부에게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 ‘(단위 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함께 현재 자유학기제에서 시행하는 교육방식이 기초학력을 저하시킨다는 논의가 있는바⁶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와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표34] 자체예산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세세부사업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계	6,227,260	1,113,600	5,113,660
교수 학습 지원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957,500	△957,500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	209,840	73,800	136,040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	242,420	27,300	215,120
		교육지원청 지원	-	55,000	△55,000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기타 운영비	(단위학교)자유학년제 운영지원	5,775,000	-	-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사업인 ‘자유학기제 연수지원(1억 3천 6백만원)’ 사업 및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2억 1천 5백만원)’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교육과정·수업과 관련된 교사들의 역량강화 연수는 이미 유사한 다른 사업들(교원역량성장지원⁶⁹⁾, 수업방법나눔확산⁷⁰⁾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교부금이 극감한 상황에 자유학기제 예산 중 연수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8) 중앙일보, “기초학력미달 증가, 자유학기제 영향”, 2019.03.28., 참고.

69) 2020년 예산에 6억 8천 9백만원 편성됨.

70) 2020년 예산에 2억 8천 8백만원 편성됨.

나) 서울미래학교운영(사업별 설명자료 674p)

① 사업 개요

- 서울미래학교운영은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융합한 혁신미래학교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교육과정 혁신과 미래형 학교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임.

서울미래학교는 2014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명칭을 ‘혁신미래학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279,790	1,823,750	좌동	1,456,040	좌동	
교수학습 개선 교사단 운영	46,690	37,750	좌동	8,940	좌동	◦ 정책정비(프런티어 교사단, 워크숍, 콘서트, 학생참여형수업 혁신통합)
미래교육 수업방법 연수 운영	133,100	164,000	좌동	△30,900	좌동	
혁신미래학교설립 지원	3,100,000	1,500,000	좌동	1,600,000	좌동	◦ 서울미래학교→혁신미래학교(확대)
서울미래학교 연구학교 운영 지원	-	80,000	좌동	△80,000	좌동	
서울미래학교 수업 프런티어 교사단 워크숍	-	22,000	좌동	△22,000	좌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수업나눔 콘서트	-	20,000	좌동	△20,000	좌동	

- 동 사업은 전년도 보다 14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32억 8천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에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서울미래학교 연구학교 운영 지원’, ‘서울미래학교 수업프런티어 교사

단 워크숍’,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수업나눔 콘서트’ 사업이 폐지되고(1억 2천 2백만원 감액), 이들 사업이 ‘교수학습 개선 교사단 운영’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9백만원이 증액된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혁신미래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미래학교설립지원’ 사업은 16억원 증액된 31억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혁신미래학교 설립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서울미래학교’에서 명칭이 변경된 ‘혁신미래학교’를 확대·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창덕여중 1개교가 서울미래학교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9년에 초등학교 1개교(서울노원초), 중학교 2개교(오류중학교, 종암중학교)가 새롭게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초·중·고 1개교씩이 추가로 지정·운영될 계획임.

[표35] 혁신미래학교 지정 현황 및 예산 계획⁷¹⁾

지정연도	2015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초등학교		1	1	-	-	2
중학교	1(창덕여중)	2	1	-	-	4
고등학교		-	1	-	-	1
예산		15억	31억	19억	7억	72억

- 혁신미래학교는 인공지능시대와 디지털 세대를 맞이해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테크놀로지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습환경에 첨단과학기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71) 서울시교육청, 2019 혁신미래학교 운영 계획서, 참고

○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표36] 참조) 동 사업은 혁신미래학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그 기기를 관리하는데 예산의 50% 이상을 편성하고 있는 바,

단순한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비용 지출이 자동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학교 구축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36] 혁신미래학교 신규지정학교의 예산 산출 근거(서울시교육청)

영역	항목	예산
테크놀로지 활용 환경	스마트기기	262,500천원 (52.5%)
	스마트기기 충전함	
	무선AP	
	무선AP 설치 인건비	
테크센터 ⁷²⁾ 구축 및 운영	테크센터 구축	50,000천원 (10.0%)
	테크센터 인건비	
혁신 미래형 교실 환경	표현하는 공간 구축	160,000천원 (32.0%)
	즐거는 공간 구축	
	나누는 공간 구축	
운영 및 성과 공유	교원연구	27,500천원 (5.5%)
	연수(내부)	
	공유 및 자료제작	
	협의회비 등	
소 계		500,000천원 (100.0%)

○ 더욱이 2019년에 혁신미래학교로 신규 지정된 초등학교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표5 참조), ‘혁신미래형교실환경구축’ 예산을 텃밭, 사육장 구축, 돌봄교실 개선, 교무행정실 공간 재배치에 편성한 바, 이러한 학교환경개선이 혁신 미래형 교실 환경 개선과는 관계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72) 테크센터는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기기를 관리하는 공간임.

[표37] 2019년 신규 지정된 초등학교의 예산 편성 내역

영역	항목	편성액
테크 놀로지 활용 환경	스마트기기	246,000천원
	스마트기기 충전함	
	무선AP 설치	
	온오프라인 소통공간(온누리실) 구축	
	방송설비 현대화(무선망)	
	기타 디지털 기기 및 장비 구입	
혁신 미래형 교실 환경	교무행정실 공간 재배치	170,000천원
	돌봄교실 개선, 학생 및 학부모 자치실	
	키움 공간 구축(텃밭, 사육장)	
	어울림 공간 구축 (놀이, 소극장, 버스킹, 전시 공간)	
	공간혁신 컨설팅	
테크센터 구축 및 운영	테크센터(전산실 개선) 구축	42,000천원
	아두이노, 레고코딩로봇(레고 부스트 등)	
	인건비(센터 운영)	
운영 및 성과 공유	출판 기획, 각종 자료 제작과 공유	42,000천원
	교원 연수	
	인건비(협력강사 및 홍보 행정 업무)	
	포럼과 워크숍	
	협의회비 등	
소 계		500,000

- 따라서 2020년에는 혁신미래학교의 확대에 앞서 현재 지정·운영 중인 4개 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혁신미래학교 추가·확대 여부는 4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759p)

① 사업 개요

-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은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에 2개 유치원(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2018년 2개 유치원(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등 총 4개의 공영형사립유치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004,320	6,004,520	좌동	△200	좌동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운영 지원	6,004,320	6,004,520	좌동	△200	좌동	

- 동 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60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공영형사립유치원 10개원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혁신 모델임.

동 사업의 대상 유치원 선정은 연중 상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청 자격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어야 하는 바,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함. 또한 법인 전환 이후에는 법인이사 '과반수 이상'을 개방이사로 교체·선임해야 하고 법인 전환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함.

이러한 다소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현재 공영형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반영하듯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2019년도 공영형사립유치원 6개원 추가선정 목표 또한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공영형사립유치원 6곳을 신규로 지정한 문제가 있음.

공영형사립유치원 확대 시, 걸림돌로 알려진 개방이사 비율, 수익용 기본 재산 비율 문제 등은 장기간 협의 및 관련 규정⁷³⁾이 개정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로, 당장 규정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 2019년과 동일하게 공영형사립유치원 선정을 계획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추가 지정 예산은 감액조정이 필요하고, 사유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라) 교원역량성장지원(사업별 설명자료 980p)

① 사업 개요

- 교원역량성장지원은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실습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지원청별 수업나눔 활동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중등학교의 수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89,910	239,810	894,310	450,100	△204,400	교사단 확대
교원성장 수업코칭 운영	42,420	46,500	좌동	△4,080	좌동	◦ 2019 신규 도입된 '교실혁명 프로젝트'의 정착기로 지속적 지원 필요(2019년 추경으로 추가지원됨)
수업나눔연수	225,500	107,250	좌동	118,250	좌동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421,990	86,060	740,560	335,930	△318,570	

7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 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은 전년도 보다 4억 5천만원이 증가된 6억 9천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사업이 3억 3천 6백만원, ‘수업나눔연수’ 사업이 1억 1천 8백만원 증액되었고 ‘교원성장 수업코칭 운영’ 사업이 4백만원 감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2019년 신설될 당시 본예산에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 5천 4백만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천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이와 같은 증액의 원인은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실제 2019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수는 2019년 2월 출범 당시 741명에서 7개월 만에 486명(60%)이 증가하여 현재는 1,22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표38] 참고).

[표38] 2019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수

(2019.10.1. 현재)

연번	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사단(명)	고등학교 교사단(명)	합계(명)
1	동부	54	17	71
2	서부	66	34	100
3	남부	81	23	104
4	북부	61	34	95
5	중부	32	31	63
6	강동송파	71	35	106
7	강서양천	111	54	165
8	강남서초	177	68	245
9	동작관악	83	31	114
10	성동광진	47	44	91
11	성북강북	62	11	73
	합계	845	382	1,227

- 이와 같이 중등교사들이 수업·평가 혁신에 관심을 갖고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2020년 예산안 중 중등 교원 연수 및

연구회, 모임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⁷⁴⁾,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중등 교원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 및 모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표39] 참고), 수업·평가는 교육과정 연수 및 모임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업·평가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39] 2020년 중등 교원 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모임 관련 예산편성 현황⁷⁵⁾

구분	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육연구정보원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705,971
	교과교육지원	200,000
	소계	905,971
교육연수원	(중등)자격연수	510,010
	(중등)직무연수	828,420
	소계	1,338,430
교육혁신과	학교혁신 기획·운영	152,000
	수학과학담당교원전문성신장	94,580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194,780
	자율형공립고운영비지원	15,000
	소계	456,360
중등교육과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중,고)	123,586
	중등연수지원	1,918,303
	평가개선장학지원	80,000
	영어교사심화연수	183,940
	제2외국어교육활동지원	16,000
	영어교육내실화지원	45,000
	소계	2,366,829
합계		5,067,590

- 또한 현재 ‘수업·평가나눔 교사단(1,227명)’ 인원은 서울시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수(39,115명)⁷⁶⁾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교사단이 늘어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사단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4) 교원 역량신장과 관련된 정책 예산 현황 [붙임11] 참고.

75) 영재교육, SW교육, 학교폭력 연수 등 특수 분야 연수 및 모임은 제외함.

76) 중학교 교원 17,596명, 고등학교 교원 21,519명 (2019.4.1.기준)

마) 중등교육연수지원(사업별 설명자료 992p)

① 사업 개요

- 중등교육연수지원은 학교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기간제교원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918,303	1,964,470	좌동	△46,167	좌동	
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연수	18,000	18,000	좌동	-	좌동	
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연수	170,240	267,800	좌동	△97,560	좌동	◦ 과거 연수신청인원 고려
서울교육연구년제	76,800	77,600	좌동	△800	좌동	
신규교사 추수연수	-	111,440	좌동	△111,440	좌동	◦ 정책정비사업 심의결과 폐지
전문상담교사 위탁연수	-	20,000	좌동	△20,000	좌동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및 연수원에서 교육
전문직역량강화연수	500	500	좌동	△50	좌동	
중등1,2급(정)교사 자격연수	216,063	219,680	좌동	△3,617	좌동	
중등교장자격연수	904,400	932,400	좌동	△28,000	좌동	◦ 연수대상인원 적정 화
교장역할역량강화연수	77,100	80,000	좌동	△2,900	좌동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135,000	135,000	좌동	-	좌동	
평가혁신사업운영	-	102,000	좌동	△102,000	좌동	◦ 세부사업이동
기간제교원1급(정)교사 자격연수	320,200	-	좌동	320,200	좌동	◦ 기간제교원1정연수 신설(약 400명)

- 동 사업은 전년도 보다 4천 6백만원 감액된 19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등교원연수지원 사업 중 ‘중등교장자격연수’는 중고등학교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위해 17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9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한편 중등교장자격연수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이수자 및 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년도 누적인원으로 인하여 교장(원장)발령 평균 비율이 45.6%에 그치고 있고 이로 인해 누적된 미발령 평균 비율도 46.2%에 이르고 있음([표40] 참고).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신규 교장(원장) 발령 인원보다 신규 자격연수 이수 인원이 많았으며 전년도 누적인원이 합해지면서 2018년에는 누적 미발령 비율이 101명(54.9%)에 이르렀음.

- 또한 이러한 누적 미발령 인원으로 인해 2019년에는 자격연수자 중에서 발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인원이 8명이었으며 6년간 발령 없이 퇴직한 총 인원은 19명에 이르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교장 자격연수를 받은 평균 인원이 96명이었고 실제 3년간 평균 발령 인원이 89명이었으며 2020년도 누적 미발령 인원이 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도 교장 자격연수 인원을 170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인원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40] 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이수자 및 발령 현황(2014년~2019년)

연도	전년도 누적인원 (A)	신규 자격연수 이수 인원 (B)	교장자격 대상 인원 (A+B)	신규 교장(원장) 발령 현황 (C)		누적 미발령 인원(%) (D)		이수 인원 중 발령없이 퇴직한 인원
				인원	% C/A+B	인원	% D/A+B	
2014	142	51	193	84	43.5%	77	39.9%	0
2015	77	86	163	73	44.8%	67	41.1%	1
2016	67	105	172	67	39.0%	70	40.7%	3
2017	70	105	175	82	46.9%	89	50.9%	4
2018	89	95	184	90	48.9%	101	54.9%	3
2019	101	88	189	95	50.3%	93	49.2%	8
전체	546	530	1,076	491	45.6%	497	46.2%	19

바) 인사관리(사업별 설명자료 1005p)

① 사업 개요

- 인사관리는 효율적인 교원인사관리 지원,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사전보원칙 수립, NEIS 인사기록 유지 관리 및 정제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603,984	1,422,550	1,694,798	181,434	△90,814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	51,660	53,160	좌동	△1,500	좌동	
교권보호	441,310	246,280	496,280	195,030	△54,970	◦ 교원업무용휴대전화통신비지원비 증가
교사전보	318,000	324,456	346,704	△6,456	△28,704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교원복지	150,000	150,000	좌동	-	좌동	
교원성과상여금	440	900	좌동	△460	좌동	
교원자격관리	1,700	2,180	좌동	△480	좌동	
사립교원인사관리	9,124	12,804	좌동	△3,680	좌동	
인사관리	631,750	632,770	좌동	△1,020	좌동	

- 동 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된 16억 4백만원이 편성됨.

사업별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권보호’ 사업이 1억 9천 5백만원 증액되었고, 그 외 사업들은 감액되거나 2019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교권보호’ 사업은 2019년 1차 추경예산 시 편성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 운영’ 사업⁷⁷⁾에 신청한 27개교에 대해 통신비를 1년간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추경예산으로 교사들에게 지급된 휴대전화는 총 429대, 스마트폰 앱 활용을 지원한 학교는 3개교로, 예산 편성액 2억 5천만원 대비 총 집행액은 1억 1천 8백만원이며 집행율은 47.3%에 불과함(〔표41〕 참고).

77) 시범운영기간은 2019년 9월~12월(4개월)까지이며 통신업체와 계약기간도 시범운영기간과 동일하여 2020년 시범운영기간을 종료하여도 위약금 및 약정료는 발생하지 않음.

[표41] 2019년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 운영 현황

운영방법	분류		지원 수량(대)	총 집행액 (천원)
	공립	사립		
휴대전화 지원	공립	유	9	118,172
		초	110	
		중	100	
		고	67	
		특수	0	
	사립	유	16	
		초	0	
		중	47	
		고	72	
		특수	8	
소계		429		
스마트폰 앱 활용	공립	초	2	
		중	1	
	소계		3	

○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핸드폰 지원 수량을 843대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학교에서 신청한 핸드폰 수량은 계획 수량의 50.9%(429대)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 상황임([표42] 참고). 이에 따라 현재 예산 미집행액은 1억 3천 2백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52.7%에 이르고 있음.

[표42] 2019년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 운영 현황

운영방법	분류		예산 편성시 수량 및 예산		실제 지원된 수량 및 집행액	
			수량(대)	예산(천원)	수량(대)	집행액(천원)
휴대전화 지원	공립	유	514	250,000	9	118,172
		초			110	
		중			100	
		고			67	
		특수			0	
	사립	유	130		16	
		초			0	
		중			47	
		고			72	
		특수			8	
소계		843	429			
스마트폰 앱 활용	공립	초	15교	2교		
		중	15교	1교		
	소계		30교	3교		

- 이와 같이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는 당초 계획 수립 당시 휴대전화 지급에 대해 면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당시, 예산 편성의 부대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동 사업 실시 후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만족도 조사⁷⁸⁾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음⁷⁹⁾.
- 동 사업은 집행잔액률이 52.7%에 이르는 등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성과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부대조건이었던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조차 예산 편성 전 시행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20년 예산안이 기 지급교사들의 기간 연장(4개월→12개월)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이라 할지라도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024pp)

① 사업 개요

-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부터 단위학교 내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지원을 위해 편성된 사업임.

78) 만족도 조사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2019.11.6.~11.17동안 이루어졌음.

79)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의 '20년도 사업 추진 전 학부모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하여 사업 계속성을 결정하도록 하며,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전체 일반고(190교) 및 자율고(40교)에서 시행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82,000	4,200,000	좌동	△118,000	좌동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3,482,000	3,600,000	좌동	△118,000	좌동	
수업환경개선	600,000	600,000	좌동	-	좌동	

- 동 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 1천 8백만원이 감액된 40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2016년에 발표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계획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이 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고교학점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⁸⁰⁾.

-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동 사업 이외에도 ‘교과교실제운영지원⁸¹⁾’, ‘일반고교육력제고지원’ 사업이 있는바,

80) 서울시교육청, 2019 서울형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서, 참고.

81)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교과교실제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1487, 2019.3.25.)

‘교과교실제운영지원’ 사업은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 학교 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일반고교육력제고지원’ 사업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연합형 및 거점형⁸²⁾’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한편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고교학점제 준비와 관련하여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36억원 대비 총 집행액은 6억 9천 7백만원으로 집행율이 19.4%에 불과함.
- 그러나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 현재 전체 일반고 및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⁸³⁾를 살펴보면, 사회교과에서 강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59교(69.1%), 과학교과에서 강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85교(80.4%), 제2외국어에서 강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44교(62.6%), 교양교과에서 강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06교(89.6%)로 평균 약 75%의 학교에서 사회·과학·제2외국어·교양교과에서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음([표43] 참고).

[표43] 2019년 일반고 및 자사고 강사 운영 현황

< 사회교과 >			< 과학교과 >		
강사수	학교수	%	강사수	학교수	%
0	159	69.1	0	185	80.4
1	54	23.5	1	38	16.5
2	13	5.7	2	7	3.0
3	3	1.3	합계	230	100.0
4	1	.4			
합계	230	100.0			

< 제2외국어 >			< 교양교과 >		
강사수	학교수	%	강사수	학교수	%
0	144	62.6	0	206	89.6
1	66	28.7	1	23	10.0
2	20	8.7	3	1	.4
합계	230	100.0	합계	230	100.0

82) 연합형, 거점형 교육과정은 타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임.

83)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174),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현황’(제출일:2019.10.24.)

- 이와 같이 소인수 과목 개설 강사의 낮은 충원율과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수업환경개선사업’에서 사물함교체 및 학습카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었는바 ([표44] 참고),

현재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 사업 예산을 당초목적과 달리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44] 2019년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예산 편성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계	4,200,000	4,188,804	11,196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3,600,000	697,488	2,902,512
수업환경개선	600,000	3,491,316	△2,891,316

- 따라서 동 사업이 2019년에 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요 목적인 소인수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고 시설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⁸⁴⁾ 예산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동 사업의 추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4) 교육부는 2019년 7월 23일 보도자료(‘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현장 안착을 철저히 이행해나겠다고 밝힘.

3) 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

가)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247p)

① 개요

- 동 사업은 22개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분산된 전자도서관 및 정보화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통합전자시스템 및 이용자용 정보화 기기의 적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30,950	1,626,620	1,706,620	△95,670	△175,670	
노후정보화장비교체	250,000	285,070	좌동	△35,070	좌동	무선인터넷 사업 일부 종료
도서관정보화시스템유 지관리	203,000	210,600	좌동	△7,600	좌동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운영지원	311,500	308,600	좌동	2,900	좌동	전책구입 중수 증가 (1,000→1,100종)
스마트도서관시스템설 치	325,000	-	좌동	325,000	좌동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설치(5개관)
자동대출반납시스템 (RFID)설치	441,450	647,350	좌동	△205,900	좌동	
통합전산시스템장비교체	-	175,000	좌동	△175,000	좌동	
평생학습관및도서관 RFID태그프린터지원	-	-	80,000	-	△80,000	

-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15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중단으로 인
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설치 사업비 3억 2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고, 자동대출반납시스템(RFID)의 연차별 확대 설치계획에 따라 2019년 22개관 구축을 완료하면서(2007년부터 시작) 2억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서 통합전산시스템장비교체 사업비 1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자료실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로 자료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RFID 자동화 기기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중단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시간 단축(자료실 22:00 → 20:00)에 대비하여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의 주요 설치 목적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야간이용(18:00~22:00) 시간대 1일 평균도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86권, 2017년 178권, 2018년 174권이며, 1일 야간 운영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당 평균 대출권수는 2016년 46권, 2017년 44권, 2018년 43권임.
- 이 중 2018년 기준 1일 평균 가장 많은 도서 대출을 하고 있는 곳은 양천도서관(282권)이며, 동작도서관(273권), 노원평생학습관(258권) 순으로 나타남.

[표45]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야간이용 1일 평균 도서대출 현황

(어린이도서관, 아현분관 제외)

도서관명	2016년			2017년			2018년		
	대출권수	열람권수	계	대출권수	열람권수	계	대출권수	열람권수	계
강남도서관	112	315	427	102	302	405	99	241	340
개포도서관	177	1,023	1,200	173	607	780	153	537	690

도서관명	2016년			2017년			2018년		
	대출권수	열람권수	계	대출권수	열람권수	계	대출권수	열람권수	계
강서도서관	155	527	682	158	633	791	162	649	811
고덕평생학습관	142	170	311	147	292	439	149	298	447
강동도서관	181	726	907	179	616	795	160	508	669
고척도서관	235	590	825	234	587	821	226	565	791
구로도서관	165	419	584	185	469	654	173	363	536
노원평생학습관	278	1,101	1,380	272	1,089	1,362	258	1,033	1,291
도봉도서관	172	517	689	117	352	469	134	401	531
동대문도서관	110	278	388	120	300	420	170	89	259
동작도서관	314	921	1,235	265	791	1,056	273	834	1,107
마포평생학습관	274	1,084	1,358	256	1,026	1,282	210	841	1,051
서대문도서관	155	790	944	150	752	903	124	618	742
송파도서관	194	697	891	200	699	899	204	715	920
양천도서관	316	1,580	1,896	301	1,507	1,808	282	1,408	1,689
영등포평생학습관	114	866	980	108	825	933	125	963	1,088
남산도서관	169	913	1,082	163	808	971	164	846	1,009
용산도서관	104	312	417	93	346	438	96	369	465
정독도서관	202	1,055	1,258	181	906	1,087	162	830	992
종로도서관	167	480	647	162	482	644	161	483	644
평 균	186	718	905	178	669	847	174	629	803

-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실 이용 시간 내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정보자료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2018년 기준 1일 평균 도서대출 권수가 174권에 불과하며, 이를 시간당 평균으로 계산했을 경우 개관시간 연장 중단으로 단축된 2시간(20:00~22:00) 동안 대출 권수는 86권(시간당 43권)에 불과함.

- 또한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여유 공간을 활용한 독서문화 조성 과 지역주민의 도서 접근성 확대를 위해 57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

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도서관은 개관시간 단축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부지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도서 접근성 및 이용 수혜자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설치를 위해 3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자치구와 함께 이미 설치된 57개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바,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46] 서울시 자치구별 스마트도서관 설치 현황

(기준일 : 2019. 8. 31.)

연번	자치구	설치 수	설치위치	비고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1	강남구	2	강남구청로비, 수서역	강남도서관, 개포도서관
2	강동구	1	천호역	강동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3	강북구	7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번동U도서관, 가오리역, 솔샘역, 4.19역	
4	강서구	-	운영사항 없음	강서도서관
5	관악구	6	서울대입구역, 신대방역, 봉천역, 낙성대역, 신림역(2대)	
6	광진구	1	군자역	
7	구로구	2	천왕역, 신도림역	고척도서관
8	금천구	-	운영사항 없음	구로도서관
9	노원구	-	운영사항 없음	노원평생학습관
10	도봉구	1	쌍문역	도봉도서관
11	동대문구	-	운영사항 없음	동대문도서관
12	동작구	1	신대방삼거리역	동작도서관
13	마포구	-	운영사항 없음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14	서대문구	2	아현역, 홍제역	서대문도서관
15	서초구	2	내방역, 양재역	
16	성동구	4	옥수역(2대), 상왕십리역, 금호역	
17	성북구	11	성신여대입구역, 월곡역, 성북구청, 돌곶이역, 보문역, 길음역, 안암역, 한성대입구역, 정릉역, 고려대역, 석계역	
18	송파구	1	잠실나루역	송파도서관
19	양천구	2	오목교역, 목동역	양천도서관
20	영등포구	3	여의도역, 제1스포츠센터, 제2스포츠센터	영등포평생학습관
21	용산구	-	운영사항 없음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연번	자치구	설치 수	설치위치	비고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22	은평구	8	녹번역, 구파발역(2대), 생태공원정류장, DMC역, 불광역, 연신내역, 역촌역	
23	종로구	-	운영사항 없음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24	중구	-	운영사항 없음	
25	중랑구	3	중화역, 용마산역, 망우역	
합계		57		

나)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사업별 설명자료 1299p)

① 개요

- 동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을 근거로⁸⁵⁾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016. 4월 설립되어 본격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음.

[표47]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841,377	1,506,047	1,669,198	1,074,506
전년대비 증감	412,377	664,670	263,151	△594,692

-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총 77개 봉사단(1,21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퇴직교직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대상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85)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평생교육과-6001, 2016.3.30.)

[표48]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지원단 현황

(기준: 2019.10월, 단위: 명)

구분	센터주관	부서 및 유관	센터공모	강동·송파	소계(A)	중복자(B)	합계(C=A-B)
봉사단	7	22	30	18	77		
봉사자	426	250	342	200	1,218	354	864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74,506	1,669,198	1,699,198	△594,692	△779,692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본운영	133,749	252,678	좌동	△118,929	좌동	도서, 집기 구입 완료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워크숍	12,840	15,840	좌동	△3,000	좌동	
정책자문단 운영	11,200	11,800	좌동	△600	좌동	
교육청 각 부서사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	423,700	480,280	좌동	△56,580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센터실무 및 공모봉사단 운영	147,882	403,820	좌동	△255,938	좌동	추진실무봉사단 축소 (47명→15명)
퇴직(예정)교직원 연수	6,280	7,280	좌동	△1,000	좌동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종합설명회	9,700	13,600	좌동	△3,900	좌동	
「Book 소리 지원단」 운영	45,760	69,260	좌동	△23,500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그린 에듀」봉사단 운영	133,500	199,180	좌동	△65,680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기초학력반」봉사단 운영	29,820	45,220	좌동	△15,400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숲사랑숲체험 봉사단」 운영	18,865	28,690	좌동	△9,825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운영	24,400	34,400	좌동	△10,000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행복한 상담실」 봉사단 운영	6,810	9,950	좌동	△3,140	좌동	봉사비 단가 인하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63,200	23,200	좌동	40,000	40,000	홈페이지 서버 이전
우수기관 방문 및 사업협력 유관기관 개발	6,800	8,800	좌동	△2,000	좌동	
「행정지원봉사단」 운영	-	65,200	좌동	△65,200	좌동	공모봉사단 전환
퇴직교직원교육생애사 아카이브구축	-	-	30,000	-	△30,000	

-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9천 5백만원이 감소된 10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사업으로 홈페이지 서버 이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추진실무봉사단이 축소(47명 →15명)되면서 센터실무 및 공모봉사단 운영 사업비가 2억 5천 6백만원 감액되었으며, 「Book 소리지원단」 운영 등 각종 봉사단의 봉사비 단가를 인하시키면서 3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중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계획⁸⁶⁾으로 설치된 것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음.
- 특히 퇴직교직원의 각종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에 9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봉사활동비가 7억 4천 6백만원으로, 동 봉사활동비가 동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예산의 77.3%, 퇴직교직원 인생2모작사업 전체 예산의 69.4%에 이르고 있음.

[표49] 퇴직교원 봉사단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봉사활동 지원비	
		산출내역	금액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본운영	133,749	상근봉사단활동 13,000원*22일*3명*12월	10,296
교육청 각 부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423,700	봉사활동 13,000원*290명*100회	377,000
센터실무 및 공모봉사단 운영	147,882	공모봉사단 13,000원*10명*30개단*25회	97,500
		센터실무봉사단 13,000*16회*12명*12월	29,952
		개인활동 13,000원*50명*15회	9,750
「'Book 소리 지원단」 운영	45,760	봉사활동 13,000원*100명*30회	39,000

86)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평생교육과-6001, 2016.3.30.)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봉사활동 지원비		
		산출내역		금액
「그린 에듀」 봉사단 운영	133,500	봉사활동	13,000원*100교*5명*18회	117,000
「기초학력반」 봉사단 운영	29,820	봉사활동	13,000원*80명*25회	26,000
「숲사랑.숲체험 봉사단」 운영	18,865	봉사활동	13,000원*15명*93회	18,135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운영	24,400	봉사활동	13,000원*20명*60회	15,600
「행복한 상담실」 봉사단 운영	6,810	봉사활동	13,000원*20명*22회	5,720
계	964,486			745,953

- 한편,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⁸⁷⁾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직까지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내부규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경비를⁸⁸⁾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87)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교통비 : 5,000원 이내 ·급식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활동용품비 등

88) “2019년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봉사지원활동 사업 추진 계획(안)” : 1일 1회(4시간 이상) 13,000원 지원(교통비 5천원, 급량비 8천원)

- 또한 동 사업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4천 7백만원(총 사업비의 4.4%) 편성되었는바, 자원봉사단 활동의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 취지와 교통비 및 급량비를 봉사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봉사단 활동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50]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업무추진비)	산출내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본운영	9,600	20,000원*60명*8회 = 9,600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워크숍	1,600	20,000원*40명*2회 = 1,600
정책자문단 운영	1,000	20,000원*25명*2회 = 1,000
교육청 각 부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14,000	20,000원*350명*2회 = 14,000
센터실무 및 공모 봉사단 운영	4,980	20,000원*225명*1회 = 4,500 20,000원*6명*4회 = 480
퇴직(예정)교직원 연수	880	20,000원*11명*4회 = 880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종합 설명회	1,000	20,000원*50명*1회 = 1,000
「'Book 소리 지원단」 운영	2,400	20,000원*10명*2회 = 400 20,000원*50명*2회 = 2,000
「그린 에듀」 봉사단 운영	5,200	20,000원*130명*2회 = 5,200
「기초학력반」 봉사단 운영	1,800	20,000원*40명*2회 = 1,600 20,000원*10명*1회 = 200
「숲사랑.숲체험 봉사단」 운영	440	20,000원*22명*1회 = 440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운영	800	20,000원*20명*2회 = 800
「행복한 상담실」 봉사단 운영	600	20,000원*15명*2회 = 600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1,000	20,000원*10명*5회 = 1,000
우수기관 방문 및 사업협력 유관기관 개발	2,000	20,000원*10명*5기관 = 1,000 20,000원*10명*5기관 = 1,000
계	47,300	

다) 역사교육활성화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327p)

① 개요

- 동 사업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추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교류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95,000	61,600	좌동	33,400	좌동	
교사연수운영	-	21,600	좌동	△21,600	좌동	정책정비 결과에 따 른 사업 폐지
동아시아평화교육 교류사업지원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	55,000	-	좌동	55,000	좌동	사업내용 확대
동아시아평화교육 교류사업지원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 험캠프)	40,000	40,000	좌동	-	좌동	

- 역사교육활성화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천 3백만원 증액된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를 위한 사업비 5천 5백만원이 증액(신설)되었으며,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사업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은 기존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사업과 함께 교류사업 확대 차원에서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 사업이 신설 추가된 것임.
-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 사업에는 역사교육 자료 개발에 필요한 운영비 외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동아시아 주변국 탐방 등)을 위한 외부위탁 사업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청소년역사체험캠프’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인 반면,⁸⁹⁾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 사업은 외부위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업예산의 편성은 동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업의 서울시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⁹⁰⁾ 동 사업비 5천 5백만원 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51] 역사교육활성화지원 세부 사업 내용

구분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신설)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탐방 프로그램으로 운영 - 현지 교육기관, 역사 유적지 등 방문 및 교류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유적지 현장답사 및 조별 토론, 강연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한·중·일 각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한 청소년 상호 교류 기회 제공
추진방법	교육청업무외부위탁	민간위탁
소요예산	운영비(운영수당, 원고료, 인쇄비): 14,000천원 업무추진비: 1,000천원 교육청업무외부위탁: 40,000천원	민간위탁금: 40,000천원

라)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350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복지 여건 구축을 통해 학업에 대한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맞춤형지원 강화로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8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40, 2019.6.19. 원안가결)

90)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의 운영을 통해 상담, 진로, 복지 등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학생의 학업복귀·진로지원·학력취득 등 학습지원을 위해 학업 중단 학생 중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93,623	1,136,658	1,425,878	456,965	167,74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165,140	-	좌동	165,140	좌동	◦ 사업명 변경 (학업중단학생등학습지원및학 력인정 → 학교 밖 청소년지 원사업 운영)
학업중단학생등학습지 원및학력인정	-	186,000	좌동	△86,000	좌동	◦ 사업명 변경 (학업중단학생등학습지원및학 력인정 → 학교 밖 청소년지 원사업 운영)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705,263	376,598	665,818	328,665	39,445	◦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 방송음향장비 및 방송시설 공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723,220	486,160	좌동	237,060	좌동	◦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 자 증가
친구랑홈페이지개설	-	87,900	좌동	△87,900	좌동	◦ 2019년 한시사업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5천 7백만원 증액된 15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및 방송시설 확충을 위 한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사업에 3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 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교육참여수당이 2억 3천 7백만원 증액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은 2018년 264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264명이 증가한 528명으로, 이 중 교육참여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610명임.
- 그러나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 610명은 누적 합계로, 10월말 현재 교육참여수당 지급인원은 ‘친구랑’ 센터에 등록된 528명 중 160명(30.3%)에 불과함.

[표52-1]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현황

연도	2018년	2019년 (2019. 9월말 기준)	비고
전체등록인원	264명	528명	264명 증가

[표52-2] 20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인원 (단위 : 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비고
초	4	3	5	6	7	9	12	12	58	* 1회 이상 수령인원 160명
중	4	6	8	11	14	15	18	18	94	
고	33	39	45	57	67	73	69	75	458	
계	41	48	58	74	88	97	99	105	610	

- 그 결과 20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은 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0월말까지 1억 1천 2백만원(23.2%)이 지출되어 이와 같은 추세라면 12월 말까지 예산의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표5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집행 현황

예산액	지출액 (단위: 천원)									잔액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집행률)	
480,000	7,600	9,000	10,700	13,650	16,200	17,750	17,700	18,900	111,500 (23.2%)	368,500

- 한편 교육참여수당 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의 교육참여수당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식비와 교통비로 약 50% 가까이 사용되었고, 이어 저축 14.2%, 문화생활비 10.6%, 교육비 10.4%, 미용의류비 6.8% 등으로 사용되었음.

[표54] 5개월간 항목별 수당 사용액(4~8월 기준)

분류	사용액(원)	비율(%)
식비	6,277,330	35.0
교통비	2,581,800	14.4
저축비	2,539,950	14.2
문화생활비	1,893,560	10.6
교육비	1,868,100	10.4
미용의류비	1,217,080	6.8
기타	1,566,740	8.7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이 당초 우려와 달리 매우 건전하고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교육참여수당의 본래 목적이 학업중단학생의 학업복귀 및 진로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용처에 비해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사업의 효과성 및 지급인원, 예산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2020년에 그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19년 매월 200명 → ’20년 매월 300명) 2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과잉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426p)

① 개요

- 동 사업은 ‘스쿨 미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 내 성폭력 방지 및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80,339	1,000,000	1,033,159	△519,661	△552,820	성인권 시민조사관수당 및 회복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축소
성인권 전문가 운영	64,695	0	33,159	64,695	31,536	채용기간 증가(6개월에서 1년) 및 인건비 3%인상안 반영
성인권 시민조사관 위촉 운영	43,624	196,400	좌동	△152,776	좌동	2019년 활동실적 반영하여 시민조사관 활동일수 감소정
스쿨미투 발생학교 회복교육 지원	196,800	599,600	좌동	△402,800	좌동	2019년 활동실적 반영하여 특별교육 및 회복교육 횟수 감소정 및 프로그램개발 사업 삭제
스쿨미투 예방홍보 자료 및 콘텐츠개발	175,220	204,000	좌동	△28,780	좌동	신규 콘텐츠 개발 축소 및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신규개발

-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5억 2천만원 감액된 4억 8천만원이 편성됨.

주된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성인권 시민조사관 수당 및 회복교육비를 현실정에 맞게 축소 편성하면서 5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인권 전문가(변호사)의 채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서 인건비 6천 5백만원이 증액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6조제1항은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38조, 제39조, 제42조에서는 학생옹호관의 설치 및 직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⁹¹⁾).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배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장학

9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1명, 일반직 2명, 노동인권전문관 1명, 인권조사관 4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인권옹호관의 지휘아래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에 성인권 정책전문관 1명, 성인권 전문가 1명을 배치하여 성인권 교육 및 성폭력 사안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특별장학·전수조사·사후처리 지원을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학생인권(성폭력, 성인권 포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센터 및 담당부서에 인력이 배치되어 유사·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9년 스쿨미투 관련 활동 실적 대비⁹²⁾ 동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2019.7.~12.) 채용되었던 성인권 전문가(변호사)만 채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사업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55]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사업 예산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0년	2019년	증감
성인권 시민조사관 위촉 운영	43,624	196,400	△152,776
스쿨미투 발생학교 회복교육 지원	196,800	599,600	△402,800
스쿨미투 예방홍보자료 및 콘텐츠 개발	175,220	204,000	△28,780
합 계	415,644	1,000,000	△584,356

92) 2019년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시민조사관 활동일수 감소, 특별·회복교육 횟수 감소, 신규 콘텐츠 개발 축소 등

바) 맞춤형진로교육(사업별 설명자료 1579p)

① 개요

- 동 사업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을 통해 진로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200,020	4,865,000	4,880,000	335,020	320,020	
서울진로직업박람회	701,300	492,000	좌동	209,300	좌동	○ 진로직업박람회 위탁용역비(학생 체험 재료비 확보 필요, 인건비 대면비용 상승)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3,159,400	3,009,900	좌동	149,500	좌동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자치구별 차등지원 예산 증액
진로체험관운영	185,000	185,000	좌동	-	좌동	
학부모진로교육 지원단 양성	-	35,700	좌동	△35,700	좌동	○ 정책정비 심의결과 꿈넙꿈진로체험에 사업통합
진로활동실구축	882,320	882,400	좌동	△80	좌동	
꿈넙꿈진로체험	267,000	250,000	265,000	17,000	2,000	○ 학부모진로교육지원 사업 통합운영
미래신기술 진로교육 혁신 연수	5,000	10,000	좌동	△5,000	좌동	○ 대상인원축소 (2인→1인)

- 맞춤형진로교육 사업은 전년도 보다 3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52억원이 편성되었음.

주된 증액 사유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사업비가 2억 9백만원 증액되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 5천만원, 꿈넙꿈진로체험 사업비가 1천 7백만원이 증액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사업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기이해-진로탐색-진로검사-진로체험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로교육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체험 재료비, 인건비, 대관비용 상승 등으로 위탁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2억 1천만원 증액된(30.4%) 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0년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사업 운영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재료비, 인건비, 대관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위탁용역비를 전년 대비 30.4% 증액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상세한 설명과 과잉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56]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위탁용역비 비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대상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50,000명 이상	
운영규모	부스 150개, 상담 요원 120명, 운영시스템 90명, 봉사자 160명 정도	
소요예산	위탁용역비: 480,200천원	위탁용역비: 690,200천원 (전년대비 210,000천원 증액)

사)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682p)

① 개요

- 동 사업은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취업진로 영역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직업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맞춤형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임.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24,161	920,000	좌동	604,161	좌동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1,524,161	920,000	좌동	604,161	좌동	◦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6억 4백원이 증가한 15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주된 증액 사유는 직업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학생교원 초청·체류비, 해외직업체험 지원, 해외 직무외국어교육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가 5억 8천 7백만원 증액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인원 감소 및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취업률 저조 등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임.
-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사업 중 ‘국제화교육 홍보’를 위해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특성화고 지원」 사업⁹³⁾에 특성화고등학교 홍보비 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홍보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어교육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 2천만원과 관련하여, 학교별 자매결연, 외국어 통번역 등 업무 지원에 필요한 보조인력은 교육청 내부인력(참여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을⁹⁴⁾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 필요성에 대해 교육

93) 「특성화고지원」 사업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36~1643p)

94) 참여협력담당관(국제협력팀) :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외빈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국제이해교육 지원,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등

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9년에 추진되었던 ‘북방지역 학생초청’ 사업을 2020년에는 ‘남방국가 학생초청’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초청국가 방문 국외출장 대상자를 4명에서 13명으로 3배 이상 늘려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는 바, 남방초청국가방문에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청의 상세한 설명과 과도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57-1] 북방지역 학생 초청사업 실적⁹⁵⁾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생수	39명	40명	32명	26명	25명

[표57-2] 2019년도 북방지역 학생 초청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학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합계	비고
1	1	4	2	4	11	※ 2020년 남방지역 교류국가(4개국) → 베트남, 동티모르, 태국, 싱가포르
2	2	3	1	2	8	
3	-	3	2	1	6	
계	3	10	5	7	25	

아) 무상급식(사업별 설명서 1862p)

① 개요

- 동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확대된바 있음.
- 한편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⁹⁶⁾, 2019년부터 국·공·사립고등학교 3학

95) 초청 학생 교육기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년과 국·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체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②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97,248,755	331,438,258	495,005,192	65,810,497	△97,756,437	
무상급식	397,248,755	331,438,258	495,005,192	65,810,497	△97,756,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초, 국제중, 고교, 각종,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 ◦ 식품비 : 농·축산물가 상승을 반영 ◦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상승

- 무상급식 예산은 전년보다 658억 1천만원이 증가한 3천 972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된 증액 사유는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각종학교, 특수학교가⁹⁷⁾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식품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상승률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년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2학년, 각종학교, 특수학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초 600교, 중 385교, 고 319교, 특수 32교, 각종 8교 등 총 1,344교(762,321명)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에서 각각 50%, 30%, 20%를 분담함.

96)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학교급식 단계적 시행(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0.29.)

97) 특수학교: 2019년 학교기본운영비에 급식비 포함 지원 → 2020년 무상급식 지원

[표58]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 예산

구 분		2020년	2019년
실시대상		초, 중, 고교 2~3학년	초, 중, 고교3학년
학 교 수		초 600교, 중 385교, 고 319교, 특수 32교, 각종(중) 5교, 각종(고) 3교	초 596교, 중 383교, 고 319교
학 생 수		762,321명	717,615명
지원일수		초188일, 중172일, 고173일, 특수 192일 각종(중) 172일, 각종(고) 173일	초188일, 중172일, 고168일
지 원 액	총소요액 (단위: 억원)	7,162(100%)	6,415(100%)
	교육청	3,972(56%)	3,602(56%)
	서울시	1,908(26%)	1,688(26%)
	자치구	1,272(18%)	1,125(18%)
	소 계	3,180(44%)	2,813(44%)

-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범사업에의 불참을 표시했던 자치구들이 예산편성 이후 모두 참여의사를 보임에 따라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지만,

현재까지 광진구의 사립초 3교(경복초, 성동초, 세종초), 국제중 1교(대원 국제중), 각종학교 1교(선화예중)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청은 관내 사립초 3교, 국제중 1교, 각종학교 1교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2020년 예산안) 위해 내부 검토 중에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광진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1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되면 서울시 관내 전체 학교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무상급식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59] 2021년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액(추정)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소요액	6,414	7,151	8,042	단위: 억원
교육청 부담액	3,602	3,972	4,417	

4) 교육행정국

가) 사립학교운영지도(사업별 설명자료 1877p)

① 개요

- ‘사립학교 운영지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및 사립학교 회계운영·지도, 사립학교 회계 지침 제작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 중 ‘사립학교 직원 직무연수’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국내·외연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동 예산안에는 국외연수 항목이 ‘학교법인운영지도’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바, 동 사업은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양강좌, 문화탐방 및 문화체험 등의 연수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3,200	123,840	좌동	△40,640	좌동	
사립학교 직원 직무연수	57,450	101,190	좌동	△43,740	좌동	○ 국외연수 사업항목 이동 ○ 연수 인원 감소 (330명→300명)
사립학교 회계 운영·지도	17,780	16,650	좌동	1,130	좌동	○ 법률자문료 및 회계지도예산 증액 (1,130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사립학교 학교회계 지침 제작	6,000	6,000	좌동	-	좌동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1,970	-	-	1,970	좌동	◦ 효율적인 사무직원 인사관리

- ‘사립학교 직원 직무연수’ 예산은 총 5천 7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안 대비 4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학교법인 직원 국외 직무연수비용 4천만원이 ‘학교법인운영지도’로 사업항목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업예산은 2019회계연도 기준 4백만원 감액된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립학교 직원 직무연수’ 사업은 사립학교 373개교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국내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1회당 약 300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600명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19년도의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한 사립학교 직원은 1차에 142명, 2차에 146명 등 총 288명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에도 2번의 연수동안 총 302명이 참석하는 등 연간 300명 내외의 사립학교 직원이 동 연수에 참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매년 관행적으로 600명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왔는바, 이는 예산안의 세부산출내역에서는 600명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300여명에 대해 1인당 2명분의 예산을 사용한다에 따른 것임. 그 결과 2019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금년도 동 사업의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95.8%에 해당되는 9천 7백만원으로 불용률이 4.2%에 불과함.

이와 같이 예산 산출기초를 허위로 기재하여 1인당 연수비의 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사업 예산을 실제 참여 인원 및 단가를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이 사학기관 운영 관련 주요사항 및 감사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직무연수를 위한 것이라면 타지역 연수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등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제 교육적 측면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

나) 사학기관운영평가(사업별 설명자료 1882p)

①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관내 전체 140개 법인 중 123개 법인을 대상⁹⁸⁾으로 법인재정과 운영, 학교행정 등 3개 평가영역 7개 평가항목 및 25개 평가지표를 통해 사학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13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운영평가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높이고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또한 평가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총 9개 법인에 대해서는 6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까지 우수기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60-1] 사학기관 운영평가 평가체계

평가영역	비중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	배점	평가기구
Ⅰ. 법인재정	30%	1.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3	13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2.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의 적정성	4	17	
Ⅱ. 법인운영	40%	1. 법인이사회 운영 정확성	3	11	
		2. 법인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	3	14	
		3. 교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4	15	

98) 유치원 또는 각종학교만 경영하는 법인 10개, 재단법인 5개, 학교 미설치법인(경남학원, 청남학원) 등 17개 법인은 제외

Ⅲ. 학교행정	30%	1.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5	18	
		2. 학교행정의 효과성	3	12	
3개 영역	100%	7개 항목	25개	100점	
가 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실시		+2	
감 점		관할청 행정처분 미이행		(-5)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		(-5)	

[표60-2]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내역

포상 부문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액(천원)	시상자
종합평가 우수기관(6)	종합 금상	1개 법인 × 11,000천원	11,000	교육감
	종합 은상	1개 법인 × 9,000천원	9,000	
	종합 우수상	4개 법인 × 8,000천원	32,000	
평가영역별 우수기관(3)	법인재정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법인운영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학교행정 우수상	1개 법인 × 6,000천원	6,000	
계		9개 법인	70,000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7,140	78,600	좌동	△1,460	좌동	
평가 우수법인 인센티브 지원	70,000	70,000	좌동	-	좌동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	7,140	8,600	좌동	△1,460	좌동	

- 사학기관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1백 50만원 감액된 7백 1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인센티브는 2019년도 기준으로 총 123개 법인 중 7.3%에 해당하는 9개 법인에게만 차등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가장 우수한 학교 법인은 최대 1천 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의 사업내용에 따른 세부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10개 법인에 7백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비 중 평가수당은 추계 단위가 15명, 업무추진비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바,

실제 인센티브지원 대상 법인수는 9개 법인이며,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구성인원은 최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추계가 계획과 달리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부정확한 추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며, 추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다) 학교법인 운영지도(사업별 설명자료 1886p)

① 개요

- ‘학교법인운영지도’는 학교법인 담당자의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과 함께 ①사교법인에 대한 지원 관리, ②사학기관 전문 자문단 운영, ③학교법인 운영관리, ④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1억 7천만원 대비 32.2%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는 140개 학교 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연수를 연 1회 실시하는 동시에 사학

운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법인직원을 대상으로 국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임.

- 또한 전체 사업비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는 ‘사고법인 지원관리’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한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70,360	134,510	좌동	35,850	좌동	
사고법인 지원 관리	80,000	80,000	좌동	-	좌동	
사학기관 전문 자문단 운영 및 관리	11,500	15,000	좌동	△3,500	좌동	
학교법인 운영 관리	23,960	34,310	좌동	△10,350	좌동	◦ 2019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예산액 감액 조정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54,900	5,200	좌동	49,700	좌동	◦ 학교법인 사무직원 직무연수 확대 ◦ 사학기관 우수직원 국외사학 연수 세세부 사업(사립학교운영지도→학교법인운영지도) 변경

- ‘사학업무 제도개선 관리’ 예산은 5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안 대비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학교지원과 내 사학재정팀이 신설되면서 종전 ‘사립학교운영지도’ 사업내 ‘사립학교(법인)직원 직무연수’를 2개팀으로 분리함에 따른 사업항목의 변동임.
- 한편 ‘사고법인 지원 관리’ 예산은 8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고법인 지원관리’ 사업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비용으로,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충암학원 1곳에 불과함에도 사업예산은 2개 법인으로 추계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학교법인은 1곳에 불과하지만, 추후 학교법인 중 임시이사의 선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이처럼 1개 법인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사업비의 추계는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향후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해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에 위배되는 것인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이외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실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또는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에 대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사업별 설명자료 1905p)

① 개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은 통·폐합 대상 학교 및 이전 대상학교, 그리고 초·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통합·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20,000	-	809,000	1,020,000	211,000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	1,020,000	-	809,000	1,020,000	211,000	◦ 적정규모학교육성지 원 대상학교 증가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예산은 총 10억 2천만원으로, 이는 2019년 도 추경예산 대비 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은 통·폐합학교와 이전학교, 통합운영학교가 대상이며, 현재 통·폐합 대상학교는 가양초, 염경초, 경서중, 성재중 등 4개교이며, 이전학교는 덕수고, 통합운영학교는 서울체육중·고와 해누리 초·중 등 4개교로 총 9개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예산은 통·폐합학교에 1억 2천만원씩 총 5개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통합학교에 마곡2중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마곡2중은 서울시교육청의 송정중 통폐합 계획 취소⁹⁹⁾전까지는 통·폐합학교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송정중이 존치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현재 마곡2중은 적정규모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신설 수요의 필요성에 따른 단순한 학교 신설인 것인바,

통합학교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신설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송정중학교 통폐합 계획 취소,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19.10.22.)

않으므로 마곡2중에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재산관리일반운영비(사업별 설명자료 1973p)

① 개요

- ‘재산관리일반운영비’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따른 제반비용과 심의 위원회 운영 및 유희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임.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18,229	1,247,493	좌동	△229,264	좌동	
공유재산심의회	15,630	3,600	좌동	12,03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명서 인쇄비용 증가 ◦ 위원회 신설
본청및교육지원청 재산관리일반	33,200	605,100	좌동	△571,9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고 매각용역 제외
신청사및연수원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800	2,200	좌동	△40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횟수 감소
유희시설물관리	657,779	380,563	좌동	277,216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물 수 및 관리기간 증가(8교→10교)
재산업무담당자연수	3,360	3,360	좌동	-	좌동	
측량·감정평가· 변호사자문수수료	275,860	222,070	좌동	53,79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 및 감정평가 횟수 증가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유지관리	30,600	30,600	좌동	-	좌동	

-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10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됨.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중 유희시설물 관리는 학교 이전 및 폐·휴교로 인한 유희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예산안에 따르면 이전학교는 공항공 1개교이며, 용도폐지에 따른 금화초 관사 1곳, 휴교 대상 학교 둔촌초, 위례초, 개포중, 개원초 등 4개교, 폐교 대상학교 염강초, 공진중, 송정중 등 3개교, 그리고 잔존 건물 관리로 인한 구) 상도유치원 1개원 등 총 10개학교임.
- 그러나 폐교 대상에 포함된 송정중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유희시설물관리비 중 송정중 관리에 따른 비용 7천 6십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사업별 설명서 1980p)

①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전년도 학교시설 개방 실적을 기초로 2017년부터 매년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9,000,000	9,000,000	9,010,700	-	△10,700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000,000	6,000,000	좌동	-	좌동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시설개선비지원 (서울시전입금)	3,000,000	3,000,000	3,010,700	-	△10,700	

○ 금전 예산안의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90억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에 신설된 것으로 매년 총 9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동장 개방률은 전년도에 비해 9%, 체육관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시설 개방율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연 1회 사용한 경우에도 개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방학교의 비율만 놓고 본다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학교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시설 및 체육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개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표61-1] 최근 3년간 공립학교 체육시설 개방률

(단위: 교, 2019년 9월 기준)

연도	운동장				체육관			
	전체	개방	미개방	개방률	전체	개방	미개방	개방률
2017	941	934	107	89%	792	581	211	73%
2018	942	820	122	87%	802	561	241	70%
2019	947	906	41	96%	861	636	225	74%

[표61-2] 2019년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구간별 지원액

(단위: 천원)

구간	개방시간	학교 수 (구성율)	개방 인센티브(60억)		시설보수비(30억)		합계	
			교당 지원액	구간별 지원총액	교당 지원액	구간별 지원총액	교당 지원액	구간별 지원총액
1구간	1,600시간 이상	89 (13.7%)	22,840	2,100,377	11,820	1,051,980	34,660	3,152,357
2구간	1,350시간 이상 ~ 1,600시간미만	52 (8.0%)	15,824	856,347	8,180	425,360	24,004	1,281,707
3구간	1,100시간 이상 ~ 1,350시간미만	64 (9.8%)	13,068	871,167	6,760	432,640	19,828	1,303,807
4구간	850시간 이상 ~ 1,100시간미만	63 (9.7%)	10,490	690,482	5,420	341,460	15,910	1,031,942
5구간	600시간 이상 ~ 850시간미만	74 (11.3%)	7,734	591,136	4,000	296,000	11,734	887,136
6구간	350시간 이상 ~ 600시간미만	101 (15.5%)	4,623	478,874	2,390	241,390	7,248	720,264
7구간	50시간 이상 ~ 350시간미만	209 (32.1%)	1,950	411,226	1,010	211,090	2,960	622,316
합계		652 (100.0%)	76,529	5,999,609	39,580	2,999,920	116,344	8,999,529
2018년 기준		665	79,122	5,996,087	39,558	2,997,752	118,680	8,993,839

- 현재 개방율과 개방에 따른 구간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최소 월 평균 4.1시간(50시간/12개월)이상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 비율은 2018년의 경우 665개교로 운동장 개방 학교 820개교 대비 81.2%이며, 2019년의 경우 652개교로 운동장 개방 학교 906개교 대비 72.0%로 개방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개방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이유는 실제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과 달리, 학교에서는 자발적 참여가 아닌 운영비 지원 및 단순 일회성 이용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62] 연 50시간 이상 개방학교 현황

(단위: 교, 2019년 9월 기준)

연도	개방학교	연 50시간 이상 개방학교	연 50시간 이상 미개방학교		
			비율	비율	비율
2018	820	665	81.1%	155	18.9%
2019	906	652	72.0%	254	28.0%

-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억의 사업예산(서울시 30억, 서울시교육청 60억)은 개방학교를 기준으로 모두 분배되고 있어, 시설개방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을수록 개방에 따른 학교별 인센티브는 감소하고, 시설개방에 참여하는 학교가 적을수록 개방에 따른 학교별 인센티브는 증가하게 되는 바, 참여 학교가 많아질수록 인센티브 지급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 목적과 인센티브 지급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시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바, 현재 개방시간을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설별 개방 대상 학교 수를 모두 고려한 단계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참여 학교수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도 늘어나는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인센티브 지급과 학교시설 개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의 지급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사)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사업별 설명서 1983p)

① 개요

-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 주체에 따라 한전 SPC형(100)과 협동조합형(101)으로 구분하여 4백만원과 4천만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음.

[표63]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교육청 지원)	○ 1교당 운영비 - 협동조합형: 금4,000만원(교육청) - 협동조합형 외: 금400만원(교육청), 한전spc형은 750만원 추가 지원
----------------------	------------------------------------------------------------------------------------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13,200	250,200	좌동	△37,000	좌동	
햇빛발전소설치대상학교 현장조사	4,200	18,400	좌동	△14,200	좌동	○ 신청학교수 감소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지원	40,000	100,000	좌동	△60,000	좌동	○ 신청학교수 감소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지원(협동조합형)	160,000	120,000	좌동	40,000	좌동	○ 신청학교수 증가
햇빛발전소 설치활성화연수	9,000	11,800	좌동	△2,800	좌동	○ 신청학교수 감소

- 100) 한전SPC형은 한전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전과 햇빛새싹발전소(주)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 학교에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임. 서울시교육청은 한전과 2016년 12월 7일 햇빛발전소 설치 업무 협력(MOU)을 체결함.
- 101) 학교햇빛발전소의 유형은 협동조합형, 민간발전사업자형(일반 민간발전사업자형, 한전SPC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모두 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 유지 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형의 경우 절차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업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KW당 3만원인 반면, 한전SPC형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나 일반 민간발전사업자형보다 사업운영의 신뢰도가 높고 사용료 면에서 다른 형태보다 KW당 1만원이 높은 4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3천 7백만원 감액된 2억 1천 3백만원으로, 이 중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은 2019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민간발전사업자형 및 SPC형태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6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협동조합형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4천만원 증액된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햇빛발전소를 2018년까지 500개 학교에 설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웠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형은 1교당 4천만원, 그 이외의 설치형태(한전SPC)에는 1교당 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음.

[표64] 햇빛발전소 추진 목표¹⁰²⁾

(단위 : 교)

추진 방식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협동조합 형	2	25	25	25	25	102
전기발전사업자 형	7	95	95	95	106	398
계	9	120	120	120	131	500

-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햇빛발전소 설치 및 설치 진행 중인 학교는 2019년 기준 총 130교로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치를 희망했으나 설치면적의 부족 등으로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56.2%에 달하고 있음.
- 더욱이 매년 동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¹⁰³⁾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예산안 제출시 설치 대상학교수를 낮추어 제출하고 있음(2018년 100교, 2019년 30교, 2020년 14교)

102) ‘햇빛발전소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교육재정과-9117, 2015.4

103) 최근 3년간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불용률

(단위 : 천원)

- 이와 같은 사업규모의 축소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예산 투입 대비 설치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 한편, 자체적으로도 햇빛 발전소의 추진이 당초 계획목표와 달리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더욱이 운영비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비용이 아닌 설치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비의 지급방식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설치 동의 확정 후 학교에 교부함으로써 동의 후 햇빛발전소의 설치를 포기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고스란히 예산의 불용으로 이어짐.

따라서 동 운영비는 전년도에 설치 완료된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예측성 및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번 사업예산에 편성된 운영비는 추후 사업추진 등의 실적에 기초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65]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

(기준 : 2019.8. 단위 : 교)

신청연도	설치	설치(진행)	미설치	합계
2013년	5			5
2014년	9			9
2015년	10		34	44
2016년	66	5	75	146
2017년	10	6	45	61
2018년	2	12	7	21
2019년		5	6	11
총합계	102 (34.3%)	28 (9.4%)	167 (56.2%)	297 (100.0%)

구분	2016	2017	2018
예산현액	163,300	1,082,331	1,205,823
불용액	48,614	262,529	902,291
불용률(%)	29.8%	24.3%	74.8%

아) 노후시설개선(사업설명서 2069p)

① 개요

- ‘노후시설개선’은 학교에서 요구한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 중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의 요구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거쳐 매년 공개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을 배정해 추진되고 있음.

②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예시]	2020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증감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46,710,994	440,440,870	590,424,786	6,270,124	△143,713,792	
노후교사개축	-	8,484,545	8,484,545	△8,484,545	△8,484,545	◦사전절차진행중
화장실개선(전면)	24,385,832	27,962,928	39,693,973	△3,577,096	△15,308,141	◦물량감소
화장실개선(부분)	3,741,108	9,121,253	11,378,967	△5,380,145	△7,637,859	◦물량감소
전기시설개선	32,498,913	19,604,760	27,069,935	12,894,153	5,428,978	◦물량증가
냉난방개선	37,939,786	39,999,579	70,930,263	△2,059,793	△32,990,477	◦물량감소
냉난방개선 (항공소음피해학교)	5,570,650	-	-	5,570,650	5,570,650	◦공항공사지원금
창호개선	40,164,990	41,713,781	55,754,131	△1,548,791	△15,589,141	◦물량감소
외벽개선	31,225,165	27,082,700	33,699,900	4,142,465	△2,474,735	◦물량증가
소방시설개선	25,222,555	9,366,560	15,956,116	15,855,995	9,266,439	◦물량증가
방수공사	20,354,024	26,097,071	26,950,135	△5,743,047	△6,596,111	◦물량감소
바닥개선	25,669,289	21,914,670	26,072,670	3,754,619	△403,381	◦물량증가
도장공사	6,890,480	7,262,706	8,163,870	△372,226	△1,273,390	◦물량감소
외부환경개선	14,878,678	16,973,980	18,612,808	△2,095,302	△3,734,130	◦물량감소
기타사업	60,638,295	90,833,743	114,793,380	△30,195,448	△54,155,085	◦물량감소
장애인편의시설	20,684,774	7,592,000	14,764,630	13,092,774	5,920,144	◦물량증가
안전관리(내진보강)	22,500,000	36,426,710	53,453,757	△13,926,710	△30,953,757	◦물량감소

안전관리 (드라이버트해소)	8,174,000	-	-	8,174,000	8,174,000	◦ 신규사업
안전관리 (샌드위치판넬제거)	1,156,375	2,451,975	2,584,665	△1,295,600	△1,428,290	◦ 물량감소
안전관리(석면제거)	25,452,308	31,940,188	43,660,335	△6,487,880	△18,208,027	◦ 물량감소
안전관리(안전점검)	-	233,000	1,495,454	△233,000	△1,495,454	◦ 물량감소
안전관리(정밀점검)	39,563,772	11,538,721	13,065,252	28,025,051	26,498,520	◦ 물량증가
환기시설개선	-	3,840,000	3,840,000	△3,840,000	△3,840,000	◦ 시범운영중

- 동 예산안에 포함된 개선 사업은 화장실 개선 80건, 전기시설개선 306건, 냉난방개선 139건, 창호개선 133건, 외벽개선 57건, 소방시설개선 143건, 방수공사 165건, 바닥개선 98건, 도장공사 120건, 외부환경개선 152건, 기타사업 272건, 장애인편의시설 72건, 내진보강 등 5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328건 등 총 13개 세부분야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총 2,065건에 4,467억 1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내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공·사립 학교들의 요구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통해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바,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추진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후인 지난 11월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통지¹⁰⁴⁾

104) '2019년도 제5차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 알림', 예산담당관-9624(2019.11.6.)

하였는바, 교부 통지된 사업예산은 54건 26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 중 성일초 교사방수공사(2억 9천만원), 아주중 교실출입문개선(1억 8천 3백만원), 목동고 본관 외벽개선(10억 7천 5천만원) 등의 사업 예산은 금번 예산안에도 이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의 중복 편성은 예산의 불용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3건의 사업 총 15억 4천 8백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은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66]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예산 중복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항목		예산액
성일초	방수공사	교사방수공사	290,160
아주중	창호개선	교실출입문개선	183,040
목동고	외벽개선	본관 외벽개선	1,075,220
합계			1,548,420

-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양재초 도장공사, 양전초 외부환경개선 및 경일고 체육관시설 교체 등 일부 사업이 구청 등 외부재원의 지원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음에 불구하고 동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 그리고 청파초병설유치원 석면제거 사업은 교실증축 사업에 석면제거 비용이 중복 편성되었고, 명신초병설유치원은 개축대상교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제거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음.
- 이외에도 경기상고는 문화재시설로 학교시설을 개선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해당하는 사업예산 10억 5천 6백만원이 감액이 필요함.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중복적 예산 편성 및 기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67] 예산 중복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항목		예산액
청파초병성유	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76,296
명신초병설유	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89,012
경기상고	창호개선	본관동외부창호개선	657,375
양재초	도장공사	교사내부도장공사	115,875
양전초	외부환경개선	포장개선	75,000
경일고	기타사업	체육관 고무안전리브교체	21,500
		체육관 흡음보드교체	20,800
합계			1,055,858

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¹⁰⁵⁾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2019회계연도 본 예산액을 기준으로 총 256건 1,533억 7천 9백만원이며 예산액(9조 9,729억 8천 6백만원) 대비 이월률은 1.5%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2.5%인 306억 8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10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68]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A)	건수	명시이월액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B)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20	9,972,986	256	153,379	1.5%	△30,682	22.5
2019	9,380,315	310	184,061	2.0%		

- 명시이월된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32.5%, 학교신증설 25.8%, 학교시설증개축 18.1%, 학교급식환경개선 10.9%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된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증설 3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3%, 학교시설증개축 17.1%, 학교급식환경개선 14.3%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명시이월 발생의 주요 사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 남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학교내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 시기와 물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이와 같은 시설사업의 진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예산의 반영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 못한 채 시설비의 명시이월을 과다하게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당해 연도에 추진 가능한 시설 물량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의 예외적 사유인 명시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69]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건, 천원, %)

사업명	건수	예산액	명시이월		
			금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256	171,019,295	153,378,703	100.0	89.7
학교신증설	44	59,465,711	49,694,163	32.4	83.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2	48,773,077	46,539,990	30.3	95.4
학교시설증개축	28	26,744,148	26,160,505	17.1	97.8
학교급식환경개선	24	25,067,712	21,885,144	14.3	87.3
학교시설증개축	2	3,888,505	3,812,965	2.5	98.1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	1,860,508	1,860,508	1.2	100.0
학생생활지도지원	2	1,630,000	529,120	0.3	32.5
대안교육운영지원	3	856,000	606,000	0.4	70.8
학생상담활동지원	14	720,000	720,000	0.5	100.0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	550,000	550,000	0.4	100.0
교육과정운영	3	525,640	120,800	0.1	23.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	449,120	449,120	0.3	100.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	182,000	182,000	0.1	100.0
직속기관운영	1	109,824	109,824	0.1	100.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	100,000	94,500	0.1	94.5
학력평가관리	1	82,000	49,014	0.0	59.8
대학수학능력시험	1	14,000	14,000	0.0	100.0
시설사업관리	1	1,050	1,050	0.0	100.0

- 한편 2020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 중 사업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은 교육지원청시설관리, 학생상담활동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직속기관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설사업관리 등 8개 사업(26건), 38억 8천 7백만원으로,

이와 같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의 교부시기 및 사업 추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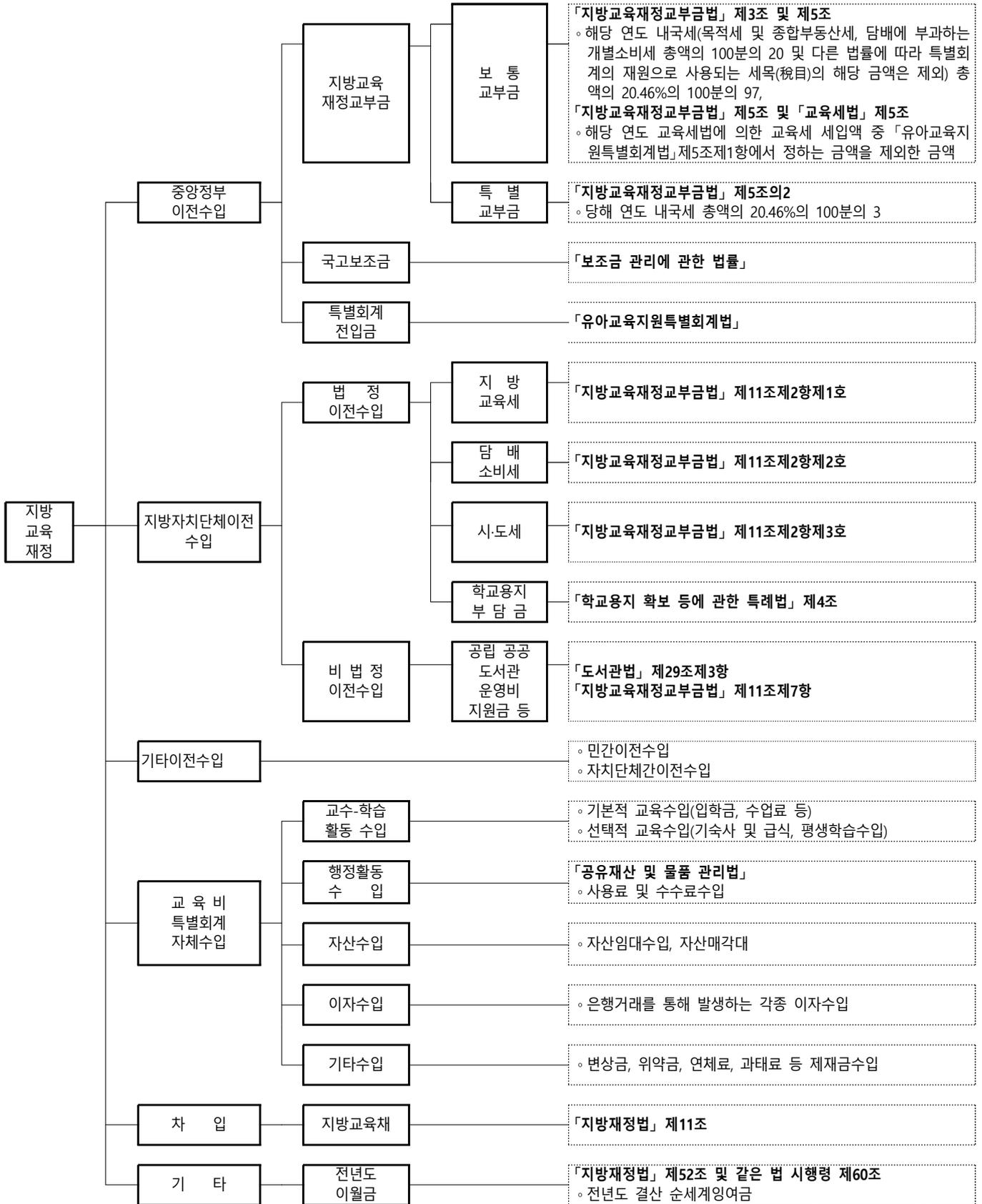
[표70] 사업예산 100%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건,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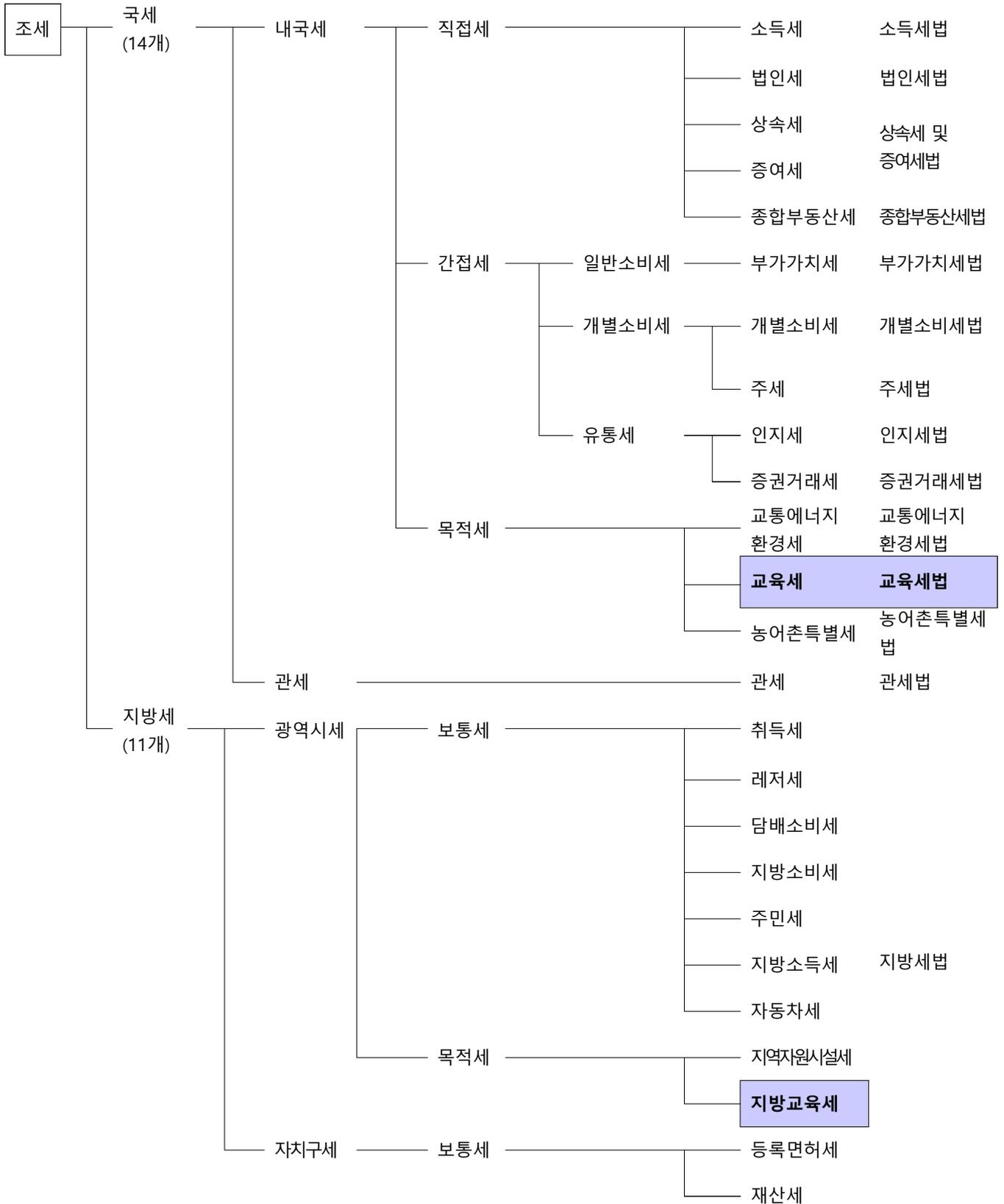
사업명	건수	명시이월액	사유
합계	26	3,886,502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	1,860,50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시설관리 (학교이적지 등 유휴부지 활용계획 결과 지연으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능)
학생상담활동지원	14	720,000	- Wee센터 이전 및 구축 (구축예정지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공사 요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	550,000	- 공항고 이전 연기('19.3→'19.8)로 인해 부지정형화 사업추진 지연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	449,120	- 강북권 학생체육관 건립 기본계획조사 (지자체와 협의 지연 및 타당성조사기간 장기소요) - 생존수영교육지원(특교) (국회추경지연으로 인한 특교 교부 지연)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	182,000	- 영어교사 심화 연수 (교육부 특교 사용기간이 2020년 상반기로서 2020년 상반기에 연수 운영 계획)
직속기관운영	1	109,824	- 학생교육원 실내교육환경 공간 및 식당 증축 (2019년 10월말 착공으로 인한 비품구입의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대학수학능력시험	1	14,000	- 평가문항개발역량강화 교사연수(특교) (교육부 요청)
시설사업관리	1	1,050	- 규격기술 심의위원 수당(LED렌탈사업) (석면재조사 등에 따른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으로 사업기한 1년 연장)

□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세목별 조세체계



[붙임3]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협력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원대상	연도별 금액					비고
		2017	2018	2019	2020	계	
미래학교 기반조성	서울시 관내학교	150	150	150	150	600	
마을 공동체 운영	서울시 관내학교	100	100	100	100	400	
정책·소통 지원	교육청, 각 기관	100	100	100	100	400	
갈등 치유 지원	지역사회, 교육청	50	50	50	50	200	
명사초청 대화	교육청	30	30	30	30	120	
각종 행사 지원	교육청, 관내학교	250	250	250	250	1,000	
지방의회와의 협업	지방의회, 교육청	50	50	50	50	200	
동계강화 훈련비	서울시 관내학교	500	500	500	500	2,000	
도심속 농촌학교 운영	서울시 관내학교	110	50	50	50	260	
도농교육 교류사업	서울시 관내학교	100	100	100	100	400	
지구촌마을 탐험대회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100	100	100	100	400	
선진 기관(농업 등) 방문	교직원	250	250	250	250	1,000	
찾아가는 테마연수	교직원	50	50	50	50	200	
사랑의 쌀 나눔	사회적 배려대상자	50	50	50	50	200	
학술교류 관련 장학금 지원	상록과학 학술재단	30	30	30	30	120	지원 보류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전국(소년)출전 선수단	30	30	30	30	120	
학교안전공제회지원	학교안전공제회	0	60	60	60	180	
합 계		1,950	1,950	1,950	1,950	7,800	

[붙임4]

교육사업비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 재원	목적지정
교육복지사업비	1,354,253	65.7%	1,259,641	94,612	77.2%	742,116	612,137
교육복지지원	1,354,253	65.7%	1,259,641	94,612	77.2%	742,116	612,137
교과서지원	111,298	5.4%	57,734	53,564	43.7%	98,014	13,284
교육급여지원	27,139	1.3%	41,101	-13,962	-11.4%	5,488	21,651
교육복지우선지원	54,765	2.7%	52,883	1,882	1.5%	53,676	1,090
기타교육비지원	71,473	3.5%	348	71,125	58.0%	50,292	21,181
누리과정지원	550,008	26.7%	577,146	-27,138	-22.1%	694	549,314
방과후학교운영	83,385	4.0%	81,397	1,987	1.6%	80,535	2,850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5,635	0.8%	20,509	-4,874	-4.0%	15,635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15,128	0.7%	30,218	-15,090	-12.3%	15,110	18
정보화지원	2,714	0.1%	3,873	-1,159	-0.9%	2,714	
토·공휴일중식지원	4,751	0.2%	5,459	-709	-0.6%	4,751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3,086	0.6%	39,858	-26,772	-21.8%	10,336	2,750
학기중급식비지원	404,872	19.6%	349,116	55,757	45.5%	404,872	
일반교육사업비	706,339	34.3%	678,324	28,015	22.8%	601,404	104,936
교수-학습활동지원	502,119	24.4%	504,931	-2,813	-2.3%	414,144	87,974
ICT활용교육	3,133	0.2%	17,162	-14,029	-11.4%	2,001	1,132
검정고시관리	830	0.0%	776	54	0.0%	830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9,741	1.0%	17,423	2,318	1.9%	16,980	2,761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386	0.2%	4,679	-293	-0.2%	4,386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976	0.0%	980	-5	0.0%	976	
교육과정개발운영	88,898	4.3%	100,876	-11,979	-9.8%	70,193	18,705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5,840	0.3%	7,937	-2,097	-1.7%	5,840	
대안교육운영지원	9,790	0.5%	6,191	3,599	2.9%	7,864	1,926
독서교육활성화	2,408	0.1%	2,381	27	0.0%	2,305	103
수련및봉사활동	5,891	0.3%	5,436	454	0.4%	5,891	
수업지원장학활동	26,747	1.3%	21,806	4,941	4.0%	17,624	9,123
연구시범학교운영	1,743	0.1%	942	801	0.7%	952	792
영재교육활성화	3,450	0.2%	4,410	-960	-0.8%	3,312	138
외국어교육	38,368	1.9%	37,368	1,000	0.8%	29,145	9,223
유아교육진흥	65,771	3.2%	60,962	4,809	3.9%	64,526	1,245
진로진학교육	6,701	0.3%	7,353	-653	-0.5%	5,208	1,493
체육교육내실화	25,046	1.2%	26,981	-1,935	-1.6%	21,370	3,676
특별활동지원	24,004	1.2%	24,823	-819	-0.7%	20,144	3,860
특성화고교육	55,933	2.7%	58,136	-2,202	-1.8%	44,415	11,519
특수교육진흥	27,300	1.3%	27,489	-188	-0.2%	25,937	1,363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7,035	0.8%	13,838	3,197	2.6%	17,035	
학교평가관리	576	0.0%	534	42	0.0%	576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학력신장	13,278	0.6%	4,599	8,679	7.1%	9,407	3,871
학력평가	9,155	0.4%	8,603	552	0.4%	7,608	1,547
학생상담활동지원	17,232	0.8%	14,950	2,282	1.9%	16,717	515
학생생활지도	14,556	0.7%	13,774	782	0.6%	11,440	3,116
학생선발배정	13,329	0.6%	14,522	-1,193	-1.0%	1,461	11,868
인적자원운용	28,400	1.4%	27,361	1,039	0.8%	28,182	218
교원역량강화	6,881	0.3%	6,856	26	0.0%	6,816	65
교원인사관리	8,301	0.4%	7,380	920	0.8%	8,202	99
교직원단체관리	946	0.0%	917	29	0.0%	946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7,311	0.4%	7,179	132	0.1%	7,311	
근로자인사관리	441	0.0%	464	-23	0.0%	441	
지방공무원역량강화	2,903	0.1%	2,829	74	0.1%	2,849	54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17	0.1%	1,736	-119	-0.1%	1,617	
보건/급식/체육활동	40,834	2.0%	27,562	13,272	10.8%	36,209	4,625
각종체육대회활동	6,347	0.3%	7,817	-1,471	-1.2%	5,316	1,030
급식관리	1,336	0.1%	963	373	0.3%	1,311	25
보건관리	33,151	1.6%	18,782	14,369	11.7%	29,581	3,570
평생교육	27,906	1.4%	27,730	176	0.1%	26,144	1,762
독서문화진흥	7,203	0.3%	7,636	-432	-0.4%	6,503	700
평생교육활성화지원	20,703	1.0%	20,095	608	0.5%	19,641	1,062
직업교육	704	0.0%	742	-39	0.0%	704	
직업진로교육	704	0.0%	742	-39	0.0%	704	
교육행정일반	106,378	5.2%	89,997	16,380	13.4%	96,021	10,356
감사관리	699	0.0%	545	154	0.1%	699	
교육정책기획관리	1,522	0.1%	863	659	0.5%	1,522	
교육정책홍보	4,372	0.2%	4,327	46	0.0%	4,372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2,202	0.1%	2,411	-210	-0.2%	2,030	172
교육행정정보화	14,548	0.7%	11,378	3,169	2.6%	9,359	5,189
교육행정혁신	5,391	0.3%	235	5,156	4.2%	5,391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519	0.0%	521	-2	0.0%	477	42
기관평가	54	0.0%	16	38	0.0%	12	42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50	0.0%	158	-8	0.0%	150	
법무관리	696	0.0%	644	52	0.0%	696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67	0.0%	145	22	0.0%	167	
사학기관지도육성	331	0.0%	337	-6	0.0%	331	
시설사업관리	21,081	1.0%	27,509	-6,428	-5.2%	21,081	
예결산관리	2,387	0.1%	973	1,414	1.2%	1,271	1,115
의정활동지원	83	0.0%	90	-7	0.0%	83	
재무관리	36,093	1.8%	25,486	10,607	8.7%	32,543	3,55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9,900	0.5%	9,000	900	0.7%	9,90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312	0.2%	4,359	-47	0.0%	4,139	173
학생배치계획	1,871	0.1%	999	872	0.7%	1,798	73

[붙임5]

2020년도 국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내역(본청, 직속기관)

연번	부서명	사업내역	사업 연속성 여부	참가규모및대상	2020년도 예산(안)		비고	
					산출내역	편성액 (단위:천원)		
1	감사관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국외연수	신규	감사관 1명	5,000,000원*1명=	5,000		
2		청렴도 우수국가 국외연수	신규	청렴업무담당자 10명	2,000,000원*10명=	20,000		
3	총무과	함께하는 테마연수	지속	연수단 70명	3,000,000원*70명=	210,000		
4		자기주도적 기획연수	지속	연수단 43명	1,500,000원*43명=	64,500		
5	기획 조정실	예산담당관	지속	지방교육재정업무 담당자3명	4,300,000원*3명=	12,900		
6		행정관리담당관	지속	담당자 3명	4,000,000원*3명*1회=	12,000		
7		참여협력담당관	글로벌역량강 화아카데미	지속	(2019) 교장, 교감 등 19명	75,000,000원*1회=	75,000	
8			해외서울교육 봉사단	지속	(2019) 교사 등 19 명	65,000,000원*1회=	65,000	
9			서울교육글로벌 농사사업	지속	(2019) 담당자 3명	10,000,000원*1식=	10,000	
10		노사협력담당관	교원노사관계 사례 연구과정국외 연수	지속	교직원단체교섭업무 담당자2명	4,500,000원*2명=	9,000	
11			공무원노사사 례 연구과정국외 연수	지속	공무원단체교섭업무 담당자2명	5,000,000원*2명=	10,000	
12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담당 자 국외연수	신규	교육공무직원교섭업 무 담당자3명	5,000,000원*3명=	15,000	
13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사합동 국외연수	신규	노사문화우수행정기 관 노사유공자(노조)2명	5,000,000원*2명=	10,000	
14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지속	0주최:교육부(2020) 0주관:대전교육청 (2020) 0규모:(2019)33명 0교육부담당자(2명)및 16개시도교육청자유 학기업무담당자(31	5,000,000원*1식=	5,000	

				명,2019)			
15		메이커페어선진 문화체험국외연수	지속	(2019)교원6명, 학생6명, 교육전문직6명	50,000,000원*1회=	50,000	
16		민간생태전환협력사업	지속	생태환경교육 유공교원, 교육전문직 20명	심사수당(40,000원+10,000원)*10명*3회 위탁비용2,100,000원*20명 각종수수료1,000,000원*1회 일반수용비500,000원*2회 업무추진비20,000원*10명*3회	46,100	
17	유아교육과	원장자격연수국외연수	지속	45명	5,320,000원*45명=	239,400	원장자격연수 전체(정책, 시도, 본연수) 예산이며, 본연수는 서울교대 연수원위탁연수로 국외연수비 예산은 서울교대연수원계획에 의함
18	초등교육과	공립초등(특수)교장 자격연수 국외연수	지속	105명	3,160,000원*105명=	331,800	국내,국외연수 위탁비(543,900천원)중 국외연수분 작성
19		서울교육연구년제	지속	15명	2,500,000원*15명=	37,500	
20		교육과정담당자(초) 국외연수	지속	1명	4,000,000원*1명=	4,000	
21		교실혁신 사례탐구국외연수	신규	20명	4,000,000원*20명=	80,000	
22	중등교육과	중등교장자격연수 국외연수	지속	중등교장 170명	5,320,000원*170명=	904,400	서울대 주관
23		서울교육연구년제	지속	교원 15명	2,500,000원*15명=	37,500	
24		교육과정담당자(중,고) 국외연수	지속	2명(시도교육청 중.고 교육과정 담당자)	4,000천원*2명=	8,000	
25		교장역할역량 강화연수 (현장지원형 학교장해외체험국외연수)	지속	학교장 15명	5,000,000원*15명=	75,000	
26		문화협정의의 한제2외국어 교원국외연수	지속	제2외국어 교사 20명	750,000원*20명=(항공료및사전연수등)	15,000	국외에서의 연수비용은 해당 국가에서 부담
27		학생평가혁신을 위한 해외심화연수 위탁교육비	지속	전문직2명 교사8명	4,400,000원*10명=(항공료및사전연수등)	44,000	
28	민주시	특수교사	지속	특수교사 25명	4,500,000원*25명=		국외 연수 장

		민 생활교 육과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현장 연수				112,500	소에 따라 인원 수 변경 가능
29			한중언어·문화 체험단운영	신규	학 생 (일 반 / 다 문 화) 70명	80,000,000원*1식=	80,000	중국 하얼빈시 교육국 소속 학 교와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 되며, 필수 인 של교사 포함
30		진로직 업교육 과	미래신기술 연계 진로교육 혁신연수	지속	담당자 1명	5,000,000원*1명=	5,000	
31			남방초청국가 방문 국외출장	지속	· 국제 화 교 육 사 업 단 현장방문 담당자 4명 (또는 2명) · 남방초청국가 담당자5명	· 3,500,000원*8명(3회)= · 4,000,000원*5명=	48,000	
32			교육환경보호 제도 담당 국외연수	신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1명	2,000,000원*1명=	2,000	
33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연수(국외)	기존	시도교육청별 2인 이내	5,000,000*2명=	10,000	시도교육청 예 술 교 육 담 당 자 및 예술유공교 원 해외연수
34			적정규모학교 육성해외연수 (적정규모학 교육성추진)	지속	교육청업무담당자 1 명	2,000,000원*1명	2,000	
35		학교지 원과	시도교육청학 생배치업무담 당자연수참가 경비	지속	교육청업무담당자 3 명	2,000,000원*3명	6,000	
36			국외 선진사학기관 탐방 통합위탁계약 비	변경	사학기관우수직원20 명내외	2,000,000원*20명	40,000	
37		교육시 설안전 과	선진재난안전 시설 및 우수시설조사 연구	지속	5명,교육(지원)청 내진업무담당자	2,000,000원*5명=	10,000	
38	교 육 연 구 정 보 원	교육정 책연구 소	국외학술교류	지속	10명(정책연구소 교 육전문직 및 선임연 구원)	2,000,000원*5명*2회=	20,000	
39	교 육 연 수 원	기획평 가부	교육연수원장 역량 강화	지속	원장 1명	5,000,000원*1회=	5,000	

교육부 산정 총액인건비와 교육청 편성 인건비 비교 (총액인건비 대상: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행정직원)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부(총액인건비 산정액)				교육청(본예산)					
		2020	2019	증감	증감률	2020	2019	증감	증감률		
공립	교원	보수	총액인건비 대상아님				3,048,591	2,963,339	85,252	2.9%	
		법정부담금 등					757,950	649,793	108,157	16.6%	
		소계					3,806,541	3,613,132	193,409	5.4%	
	교육전문직	보수					46,575	42,304	4,271	10.1%	
		법정부담금 등					62,845	56,728	6,117	10.8%	
		소계					62,845	56,728	6,117	10.8%	
	지방공무원	보수					400,513	382,244	18,269	4.8%	
		법정부담금 등					536,277	506,854	29,423	5.8%	
		소계					536,277	506,854	29,423	5.8%	
	공무원인건비		599,122	563,582	35,540	6.3%	4,369,103	4,138,797	230,306	5.6%	
	공립	계약제교원	보수	총액인건비 대상아님				218,877	201,676	17,201	8.5%
			법정부담금 등					45,525	39,211	6,314	16.1%
			소계					264,402	240,887	23,515	9.8%
		계약제근로자	보수					12,076	11,410	666	5.8%
			법정부담금 등					20,834	14,799	6,035	40.8%
			처우개선비					41,399	37,938	3,461	9.1%
			장애인고용의무제 운영					5,183	5,458	△275	△5.0%
			소계					79,492	69,605	9,887	14.2%
근로자인건비		343,894	310,492	33,402	10.8%	343,894	310,492	33,402	10.8%		
계		4,712,997	4,449,289	263,708	5.9%	4,712,997	4,449,289	263,708	5.9%		
사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무직원인건비	101,803	97,822	3,981	4.1%	79,885	77,843	2,042	2.6%	
		교원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아님				1,036,195	987,748	48,447	4.9%	
		교직원성과상여금					61,575	60,053	1,522	2.5%	
		교직원맞춤형복지비					15,613	12,978	2,635	20.3%	
		고교무상교육지원					150,030	0	150,030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01,803					97,822	3,981	4.1%	1,343,298	1,138,622
합계		700,925	661,404	39,521	6.0%	6,056,295	5,587,911	468,384	8.4%		

2019년 집단임금 보충교섭 직종 및 요구안

분류	직종	요구사항
강사직군	① 영어회화전문강사	① 기본급을 교육공무직(공통급여체계적용직종)과 동일한 인상률로 적용한다. ② 처우개선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초등스포츠강사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기본급을 보수표 1유형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처우개선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④ 다문화언어강사	① 기본급을 교육공무직(공통급여체계적용직종)과 동일한 인상률로 적용한다. ② 처우개선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특수운영 직군	⑤ 당직 ⑥ 미화 ⑦ 시설관리 ⑧ 콜센터	① 기본급을 보수표 2유형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처우개선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기본급이 유형1보다 높은 직종	⑨ 교육복지전문인력 ⑩ 시설기동보수반	① 기본급을 교육공무직(공통급여체계적용직종)과 동일한 인상률로 적용한다. ② 처우개선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기본급이 유형1보다 낮은 직종	⑪ 통학차량실무사 ⑫ 방과후코디 ⑬ 학습준비물센터 실무사	① 기본급을 교육공무직(공통급여체계적용직종)과 동일한 인상률로 적용한다. ② 처우개선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붙임8]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단위: 명)

정원관리 대상			정원관리 비대상		
순	직종명	합계	순	직종명	합계
1	유치원교육실무사	233	1	(고교)사서	13
2	교육실무사[교무]	828	2	간호사	1
3	구 학부모회직원[교무]	117	3	공강실관리자	1
4	교무행정지원사	1,105	4	과학체험교육지도사	14
5	교육실무사[과학실험]	931	5	다문화코디네이터	3
6	구 학부모회직원[과학]	10	6	당직(방호)	3
7	교육실무사[전산]	562	7	당직전담원	1,526
8	(초, 중)사서	793	8	도서관연장운영인력	111
9	교육실무사[실습]	121	9	도서실관리보조	126
10	구 학부모회직원[사무]	441	10	도제행정지원사	10
11	구 학부모회직원[시설]	182	11	돌봄교실보조	20
12	구 학부모회직원[청소]	1	12	매점관리	2
13	사무행정실무사	234	13	미생물시험검사원	1
14	특수교육실무사	807	14	미화원	1,143
15	돌봄전담사(전일제)	569	15	발명교실실무사	8
16	돌봄전담사(시간제)	1,119	16	방과후사무실무사	18
17	특수애드듀케어강사	78	17	배식실무사	787
18	유치원에듀케어강사	793	18	변호사	13
19	영양사	391	19	사감	34
20	조리사	915	20	사회협력전문가	1
21	조리원	3,864	21	학습상담연구원	7
22	전문상담사	389	22	수영장운영인력	38
23	지역사회교육전문가	272	23	수학체험교육지도사	2
24	유아교육복지전문가	9	24	시설관리	100
25	프로젝트조정자	23	25	시설관리원	468
26	유아교육사	12	26	시설기능공	31
27	수련지도사	69	27	운전원	25
28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40	28	자율학습감독	60
29	학부모상담사	2	29	장애교원보조인력	20
			30	전문연구원	5
			31	주말안내원	3
			32	직업교육거점학교스페셜코디네이터	4
			33	진로체험실무사	1
			34	청소	263
			35	취업지원관	15
			36	카페업무보조	2
			37	콜센터상담원	37
			38	테크니션	4
			39	통학차량실무사	42
			40	학교보안관	1,159
			41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
			42	학습자료보조	30
소 계		14,910			6,153
총 계					21,063

[붙임9]

2019 교육청 각종 센터 운영 현황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명	개소	설립근거	근거분류	설치 년도	2019년예산 (단위:백만원)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지원및보호에관한 조례 제9조	자치법규 (조례)	2015	307
감사관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지원센터	1	○서울시교육청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규정(훈령, 2013.10.1.)	자치법규 (훈령)	2013	42
총무과 (민원)	서울교육콜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훈령) 제6조	자치법규 (훈령)	2007	37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 /총무과(기록관리)	교육정보통합콜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 운영계획(정보운영과-148, 2013.1.25.)	중앙부처 계획	2013	469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	지역교육복지센터	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민관협력활성화조례제6조	자치법규 (조례)	2012	5,284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1	-		2017	77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	서울학부모지원센터	1	○학부모지원센터운영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0.9.17.)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자치법규 (조례)	2010	8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2015.12.31.) 제11조의2 ○교육감결재(2011.4.)(2015.12)	자치법규 (조례)	2014(1) 2018(1)	2,717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학교혁신지원센터	1	○2016서울형혁신학교운영기본계획(2016.1.8.) ○교육감결재(2016.2.2)	자체계획	2016	19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화교육)	과학교육센터	11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제5조 ○과학교육센터정비및효율화추진계획(2017.11.21.)	법령	2003	507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화교육)	발명교육센터	2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	2002	884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	영재교육지원센터	1	○영재교육 활성화 계획(부교육감 결재, 2003.6)	법령	2003	117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 방과후학교지원센터구축운영계획(2007)	자체계획	2007	65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서울학습도움센터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부계획 ○자체계획	법령	2012	1,294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 타 공감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법령	2013	246
중등교육과 (교수학습 독서, 외국 어교육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1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법령	2004	330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1	○평생교육법(1999. 8. 31) 제14조 및 평생교육법부칙 제4조	법령	2000	16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1	○교육인생2모작사업 기본계획(2016.3.30.)	자체계획	2016	1,66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2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7조	자치법규	2013	111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명	개소	설립근거	근거분류	설치 년도	2019년예산 (단위:백만원)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조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42조	자치법규 (조례)	2012	95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	○학교폭력근절대책(관계부처합동, 2012.2.6.)	중앙부처 계획	2012	42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Wee센터	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4항·제54조제3항제2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1조제9항및제14조 제1항 ○교육부훈령제285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2013	4,64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대안교육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 제5 조	자치법규 (조례)	2003	11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1	○학업중단학생복지지원사업(교육부, 2014.3.1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부청소년지원조례제11조	자치법규 (조례)	2014	37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1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법령	2007	1,94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교육감결재(2013.8.13.) ○교육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업무협약 (2016.12.6.)	법령	2016	10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18.9.28.)	자치법규 (조례)	2012	58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종합 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안전기본조례(시행2015.4.2.)제6 조(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제2항	자치법규 (조례)	2014	40
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마음건강ONE-STOP지원센 터	1	○교육기본법제27조(보건및복지의증진) ○학교보건법제2조(정의), 제7조(건강검사등)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보건법제11조(치료및예방조치등)	법령	2013	145
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1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보건관리)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기금의사용등)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승인 : 교육감 결재(2016.2.23.)	법령	2016	810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1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법령	2005	31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안심생존수영교육 지원센터	1	○100대국정과제54(미래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 현) ○2018.1.29.대통령업무보고(교육부)54-4-4상호협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육교육·초등생존수영 6학년까지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협력사업·미래교육도시 서울	중앙부처 계획	2018	479

2019년도 교육청 상설비상설 구성체 현황(2019.10 기준)

(각종 지원단, 협의체, 평가단, 센터 등)

연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1	정책안전기획관	학교안전교육 모니터링단	○유·초·중·고학교안전교육에대한모니터링 및컨설팅 ○학교안전교육운영,연수내용,교재등에대한현장모니터링및컨설팅	하반기 구성 검토	학교안전정책운영및평가
2	정책안전기획관	학교안전계획 및 실적 평가단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학교안전계획 및전년도실적평가	(본청)고·특수학교교감,교사,행정실장등으로구성 -교감1명,교사6명,행정실장1명,행정실직원2명(총10명) (지원청)관내유·초·중학교교감,교사,행정실장등으로구성	학교안전정책운영및평가
3	정책안전기획관	공약이행소통평가단	공약 추진 실적 및 공약 변경 사항 등 공약 이행사항 관리	교직원, 학부모 및 시민 등 72명	공약이행관리
4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체제구축및발전방향협의 ○서울특별시(이하"시"라한다)와교육청단위의협력사업추진,조정및운영재원확보방안협의 ○혁신교육지구운영에대한모니터링및사업점검 ○그밖에혁신교육지구와관련하여교육감이요구한사항에대한협의	(교육청)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울시)평생교육국장,교육자문관 자치구대표위원25명,시의원4명	혁신교육지구운영
5	참여협력담당관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학교협동조합활성화관련정책수립및정책추진사항자문 -학교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등	관계공무원3명 서울시의원1명 유관기관전문가3명 학교협동조합관계자2명 교수1명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6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행정협의회	○일반회계전입금으로충당되는교육행정기관세출예산편성에관한협의 ○법정및비법정전출(전입)금규모와전출(전입)시기에관한사항 ○학교설립및교육시설확충등학교교육여건개선에관한사항 ○공공도서관설립,운영,학교급식개선,재난안전관리에관한사항등기타교육사업지원에관한사항 협의·조정 및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논의	(교)교육감,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 (시)시장,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여성가족정책실장,도시계획국장 (의회)양민규(교육위),이세열(행자위)	대외교육협력관리
7	참여협력담당관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서울교육정책방향및교육감이필요에따라요청하는핵심정책과현안에대한자문및모니터링 (온오프라인으로운영)	학부모430명 시민 162명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8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학부모회 컨설팅단	학부모회질의사항을중심으로학교참여공모사업등학부모회운영전반에관한컨설팅실시	교장7명,교감7명 행정실장6명, 주무관7명 학부모64명	공모사업지원단 운영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공모사업컨설팅 실시
9	참여협력담당관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단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상시 상담 및 지원	총32명 (교사2명,교육공무직16명,교육행 정직14명)	교육비지원정보 시스템운영
10	교육혁신과	자유학년제 현장지 원단	자유학기(학년) 정책 현장 적용 모니터 링, 학교 컨설팅 및 연수	교원 105명	서울형자유학기 제운영
11	교육혁신과	자율형공립고 운영 성과 평가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자공고의 5년주기 운 영성과 평가의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 시	교육전문가(교장,교감,행정실장, 교수,시민단체대표 등)10명	자율 학교 등 지 정운영평가
12	교육혁신과	STEAM컨설팅단	연구교원(팀)을 대상으로 연구 상황 점검 및 평가	교육전문직10명	STEAM교육내 실화지원
13	교육혁신과	정보교육중앙지원단	정보교육의 중장기 계획수립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60명	SW교육활성화 지원(특별교부 금)
14	교육혁신과	소프트웨어교육 지 원단	소프트웨어교육 컨설팅 및 우수 수업 사 례발표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교원 50 명	SW교육활성화 지원(특별교부 금)
15	유아교육과	유치원컨설팅장학지 원단	유치원 컨설팅 장학위원이 요청한 유치 원에 방문하여 컨설팅 장학 실시	총 386명(원장 79명, 원감 142 명, 교사 48명, 외부전문가 85 명, 퇴직교원 13명, 교육지원청 관계자 19명)	종합컨설팅지원 단운영
16	유아교육과	수업교수와더불어수 업나눔	수업교수1인당5명의저경력참여교사가팀을 이루어5회이상소집단맞춤형수업나눔을실 시함으로써교수학습전문성을신장하는사업	1.수업교수:총15명 -원감:3명 -교사:12명 2.참여교사:총77명	서울유아교육지 원계획수립 (교수학습수업 지원)
17	유아교육과	학부모안심유치원현 장평가단	학부모 안심유치원 공모 참여 유치원 현 장 평가 운영	유아교육 전문가, 급식분야 전 문가, 시설설비분야 전문가(평가 단별3명)	학부모안심인증 제 (특별교부금)
18	초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초등현장실무지원단	단위학교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업무지 원 단위학교학교생활기록부점검및컨설팅지원 학교생활기록부연수강사활동및도움자료개 발등	교감 1명, 교사 21명	학생평가내실화
19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컨설팅지 원단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 장 중심의 컨설팅 운영	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방과후학교담당초등장학사 방과후학교담당초등장학사 초중등학교행정실장및교육협력 복지과교육협력복지과담당주무 관,초중등학교교사등	방과후학교지원 센터운영
20	초등교육과	2019초등서울두드림 학교 컨설팅단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교감13명, 교사 11명	기초학력향상지 원(특별교부금)
21	초등교육과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단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 방향성 제시, 놀 이터 조성 대상학교 컨설팅 등 자문활동	자문위원 6명	안성맞춤놀이환 경조성 (꿈을담은놀이 터)
22	초등교육과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 자문 단	각 북과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평가	교장1명, 교사16명	현장중심장학활 동지원
23	중등교육과	수업평가나눔교사단	○교육지원청별특색에맞게수업평가혁신을 위한학교급별,교과별 주제별로교사단구성	○총인원:1,227명 ○교육지원청별수업평가나눔교	교원역량성장지 원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혁신을위한학교간수업·평가나눔교사단내소모임분과연구활동 ○단위학교교원학습공동체의수업나눔활성화및수업공개선도 ○수업혁신에대한멘토멘티컨설팅 ○수업평가나눔자료집제작 ○수업나눔워크숍에서수업혁신사례공개및공유 	사단 -동부: 71명(교감 1, 수석교사 3, 교사 67) -서부: 100명(교감 1, 수석교사 6, 교사 93) -남부: 104명(교감 3, 수석교사 7, 교사 94) -북부: 95명(수석교사 12, 교사 83) -중부: 63명(수석교사 4, 교사 59) -강동송파: 106명(교감 1, 수석교사 7, 교사 98) -강서양천: 165명(수석교사 3, 교사 162) -강남서초: 245명(교장 2,교감 2,수석교사 6, 교사 235) -동작관악: 114명(교감1, 수석교사 5, 교사 108) -성동광진: 91명(교장1, 수석교사 5, 교사 85) -성북강북: 73명(수석교사 3, 교사 70)	
24	중등교육과	독서교육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독서·토론·글쓰기수업방법연구 ○협력적글쓰기등서울시교육청개발모형현장적용사례개발 ○교육지원청연수및컨설팅지원 ○워크숍참석 ○독서교육관련교수 학습자료개발 ○수업콘서트참여 	교장2명 교감1명 교사147명	독서교육지원센터운영
25	중등교육과	학생평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평가개선방향제시 학생평가개선컨설팅 학생평가개선각종연수 학생평가개선을위한지원단체역량강화 	교사 120명	평가혁신사업운영
26	중등교육과	학생부현장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기재요령컨설팅 학생부기재요령연수 학생부현장점검 학생부기록내실화방향제시 	교감5명 교사49명	학생평가내실화(특별교부금)
2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인권증진 지원단	학교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모니터링으로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초중고 교감 및 교사 22명	인권교육활성화
2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교육협의체	평화교육의비전수립, 평화교육학교안착지원, 평화교육의구체적실천방안마련및 남북교육교류사업자문	교육청소속직원2명,교사9명,교장2명,교감1명,교수2명,전문연구소박사급연구원4명,외부전문기관(NGO)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교육역량강화지원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2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봉사학습활성화자문단	학생봉사활동 운영 및 협력 방안, 운영 계획 자문	교사, 장학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단체 등 (구성중)	학생봉사활동교육내실화
3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봉사활동추진단	유관기관 및 지원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자원봉사 체계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등	11개 지역청 별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봉사학습 실천학교 교사, 장학사 총 8명	학생봉사활동교육내실화
3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자치컨설팅지원단	학교 및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학생자치활동 지원(학교 개별 및 합동 컨	학생자치전문성가진중등교원45명	학생자치활동활성화(특별교부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설팅)		금)
3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통합교육지원단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일반, 특수 교육과정 지원 및 학교/학급/개별 차원의 문제행동 증재, 위기 상황 지원 등	본청1단교육지원청11단:교장11명,교감13명,전문직40명,교수10명 교사112명,사회복지사12명,변호사9명,학부모10명,심리상담가10명,기타6명,총233명	특수교육지원강화(특별교부금)
3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등	(11개 지역청별) 교육청소속직원 3명, 특수학교(급)관리자 1명, 상담전문가 1명, 장애학생보호자 1명, 성교육전문가 1명, 여성청소년담당경찰관 1명 총 9인 이상 총 158명	특수교육지원강화(특별교부금)
3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긍정적행동지원단	문제행동고위험군학생(특수학교재학)을대상으로한 개별적,종합적증재지원계획수립및실행	의사2명, 행동분석가 3명, 작업치료사 5명, 특수교육전문가 5명, 심리상담사 5명, 소아심리 2명, 사회복지사 2명, 성교육전문가 1명, 교육전문직원 2명, 행동증재 코디네이터 1명	통합교육지원
35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학교의 사안처리 컨설팅 요청시 학교방문하여 컨설팅	교장 7명, 교감 14명, 교사 15명, 변호사 13명, 학교전담경찰관 31명, 인권조사관 4명	
36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위기학생 상담지원단	위기 및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자살징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구성 예정) 서울시교육청 또는 학교전문상담사로 구성 예정	
3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법률지원단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 법적분쟁 법률상담 및 지원	변호사 12명	학교폭력예방대책
38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컨설팅및성과분석 ○학교예술교육활성화지원 ○학교예술교육네트워크구축	-	예술교육활성화(특별교부금)
39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정신건강컨설팅지원단	학교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	관내 보건교사	정신건강관리
4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제100회전국체전지원	제100회전국체전지원	교육감,부교육감,평생진로교육국장,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담당장학관,체육담당장학사	전국체육대회
41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체육중앙지원단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체육교육포털구축운영 ○학교체육교육정보제공으로연구,성과분석,자료개발,연수등사업운영 신청사설계안평면확정을위한	-	학교체육중앙지원단운영(특별교부금)
42	교육시설안전과	청사이전협력지원단	의견수렴및스마트오피스적용에대한세부사항검토	본청각과주무팀사무관 또는 장학관	기획시설사업추진및지원
4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공간혁신사업 전문가지원단	미래교육변화에대비한서울교육공간총괄자문 ○기존학교공간리노베이션(꿈을담은교실)추진 ○디자인중심의설계공모사업(5천만원이상 증개축사업) ○서울교육공간플랜후속연구자문 ○교육시설관리체계및지원개선컨설팅자문(컨설팅기관:AURI)	성균관대 권문성 교수 외 11인(전문가, 학계관계자 등)	건축공간정책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44	진로직업교육과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학생진로체험활동인솔보조 단위학교진로교육행사지원 직업체험일터발굴및일터점검	학부모	맞춤식진로교육
45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추진 및 현황 점검	교원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담당자 262명	진로교육활성화지원(특별교부금)
46	진로직업교육과	국제화교육 지원단	○서울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사업단컨설팅 ○국제화교육장기발전을위한정보공유및의견수렴으로차년도정책반영 ○워크숍을 통한 초청연수및성과공유	특성화고 교사 85명 및 국제화교육지원 사업단 25교 업무담당자 25명 내외(총 110명 내외)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47	진로직업교육과	현장실습지원단	○취업담당부장및노무사를활용한현장실습지원단구성으로전문성과안전성확보 ○현장실습학교점검지원및컨설팅을통한효율적인단위학교현장실습지원체계마련 ○교육청단위현장실습실무지원을통한현장의어려움및애로사항해소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1명), 취업지원센터 팀장(2명), 현장실습 . 취업담당부장(16명), 노무사(16명) 등	고졸취업지원확대(특별교부금)
48	진로직업교육과	현장실습 선도기업 협의체	○현장실습운영지침수립및메뉴얼검토 ○선도기업항목별인정심의	외부위원은전문가위원(6명) 학교위원(6명) 교육청담당장(5명)	고졸취업지원확대(특별교부금)
49	학교지원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학교(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부교육감1명 실·국장4명 시의원2명 학부모2명 교장2명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50	학교지원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교육지원청및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학교(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내부위원, 학부모, 의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51	교육연구정보원	나이스 현장자문단	○학교현장지원및나이스운용모니터링실시 ○나이스의안정적운영지원	총40명 (교장1명,교감2명, 초·중·고교사35명, 일반행정2명)	나이스운영
52	학생교육원	수련교육개발과정위원회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련교육의 개발	총25명 교육전문자:10명 전문경력관:1명 수련지도사:14명	수련교육과정개발위원회
53	학교보건진흥원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단	전문가인프라구축및 사업역량강화	단장:교수1명 공동연구원:교수2명 수석연구원:1명 연구원:2팀6명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지원단지원
54	교육연수원	연수원 자문위원회	연수에관한기본계획및발전방향에관한사항, 기타각종연수에관한필요한사항자문	총 13명(교수2, 전 국장 1, 관장 1, 실장 1, 민간단체 대표1, 장학관 2, 사무관1, 교장2, 수석교사1, 교사1)	자문단운영
55	교육연수원	평가관리단	연수 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총 11명(각 부서 부장, 수석연구사, 교육행정주무관, 현장교사 등)	교원연수평가
56	교육연수원	특수분야연수기관심의위원회	특수분야연수(교육연수원에서실시할없는연수과정)를실시하는기관이교원의직무와관련된연수를실시할수있는기관인지의적절성여부판정	총 24명(교장 9명, 교감 4명, 교사11명)	특수분야연수기관운영
57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교육청에접수된공익제보의통합처리 ○공익제보자보호지원을위한사무처리등	공무원 5명	공익제보센터운영
58	감사관	교육행정지원센터	○교육행정업무관한상담및질의답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지원센터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감사사례연수및예방감사		터운영
59	총무과	서울교육콜센터	○ 민원에 대한 고품질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콜센터상담원19명 (특수운영직군)	민원콜센터운영
60	교육연구정보원	나이스콜센터	○대국민서비스사용자의맞춤형정보서비스 제공 ○교직원대상정보시스템(나이스)사용안내	나이스운영과주무관1명 나이스콜센터상담원15명	교육정보통합콜 센터운영 행정기관교육공 무직원인건비
61	참여협력담당관	지역교육복지센터	○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학생의 학교적 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 연계 및 교육복지 네트워크 거점 역할	민간위탁(해당 기관에서 자체 채용, 센터당 4명)	마을기반형교육 복지협력사업
62	참여협력담당관	학교협동조합지원센 터	학교협동조합신규설립운영컨설팅및상담 학교협동조합관련제도개선및운영지원 학교협동조합교육·연수,네트워크운영및유 관기관협력등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명	학 교 협 동 조 합 활성화지원
63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자녀 교육 관련 고충 해소 및 문의사항 응답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학부모상담사 2명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64	체육건강문화예술 과	서울창의예술교육센 터	○ 문화예술기반 창의인성(감성) 체험프 로그램 교육	주무관 2명, 사무원 2명, 파견 교사 2명	서울창의예술교 육센터 제2서울창의예 술교육센터
65	교육혁신과	학교혁신지원센터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정보 관리	장학사1명,파견교사1명 연구교사3명	학교혁신기획운 영
66	교육혁신과	과학교육센터	○과학교사연수,과학실험실무사연수운영 ○과학경진대회운영 ○학생체험중심과학교육활동운영 ○영재학생교육	센터당파견교사1명, 과학실무사1명 (11개센터운영)	과학교육센터운 영
67	교육혁신과	발명교육센터	○ 각종 발명교육 연수, 학생교육, 대회 등 운영	센터당 파견교사 1명, 주무관5 명, 교육실무사 7명, 계약직 9명	발명교실운영
68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교수학습자료개발 ○영재교육담당교원워크숍운영 ○영재교육대상자선발도구개발	센터장-송태영교육연수부장 연구사(검임)-박정희,조성연	- 영재교육내 실화지원 - 영재교육담 당교원전문성신 장 - 영재교육활 성화(특별교부 금)
69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방과후학교운영지원및홈페이지운영 ○방과후학교온라인관리시스템및나이스방 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연수지원등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초등1, 중등1), 주무관 2명, 직원 2명	방과후학교지원 센터운영
70	초등교육과	서울학습도움센터	○ 맞춤학습상담, 학습전략상담, 학부모 상담, 병원치유지원 등	장학관1명,장학사2명(초등1,중등 1) 연구원7명	기초학력향상지 원 기초학력향상지 원(특별교부금)
71	중등교육과	교권보호및교원치유 지원센터(공감)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지원, 교권보호및교원 치유센터 운영	변호사 1명, 상담사 1명	인사관리
72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학교도서관지원및협력	사서주무관11명 (교육지원청별1명)	학교도서관지원 센터운영
73	민주시민생활교육 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온센터포함)	○중도입국학생입학절차안내,상담등원스 톱서비스제공 ○다문화교육및세계시민교육등교육프로그 램운영 ○다문화학생한국어교실(KSL),심리정서및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다문 화코디네이터 2명	다문화학생지원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진로상담프로그램운영 ○다문화교육지원네트워크구축및유관기관연계		
7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관련정책,지침등연구개발및실태조사 실시 ○학생인권침해사건에대한상담,조사,구제및제도개선권고 ○인권교육및교재개발지원등 ○학생인권위원회,참여단운영등	학생인권옹호관, 사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인권조사관 4명	인권교육활성화
75	평생교육과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기관중사자연수 ○학교지원형평생교육추진 ○평생학습네트워크연계협력 ○평생교육정보제공및평생학습상담	-센터장:1명,3급부이사관(마포평생학습관장겸임) -부센터장:1명,5급사무관(마포평생학습관평생학습과장겸임) -공무원:3명, 임기제(2명), 전문경력관(1명)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76	평생교육과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재능기부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울교육발전에 기여	-센터장:1명,퇴직공무원 -공무원:3명,일반직 -기간제:2명 -자원봉사자:46명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7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One-Stop신고전화접수및상담	전문상담사 12명	117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
7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Wee센터 (Wee센터이전/구축)	○고위기학생지원 ○학교폭력,학업중단등학교부적응조기진단및치유 ○단위학교상담기능강화지원등	전문상담교사46명 전문상담사67명	학생상담센터운영
79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위탁학생상담및의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교무학사및행정업무지원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운영등	전문상담사 3명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8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청소년도움센터'친구랑'	○ 학교 밖 청소년 휴식, 상담, 복지, 학업복귀, 진로 설계 도움	명예센터장1명, 전문상담사5명, 일용직4명	학교밖청소년지원
8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각종교육지원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8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학생직업능력평가및맞춤형진로·직업컨설팅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 ○진로·직업교육관련연수(학부모,교사,직무지도원등) ○지역사회유관기관등과연계한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20명(일용직 포함), 교육청 파견교사 1명, 교육공무직원 1명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83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센터	1.설치근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법률 제13942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9. 27., 제정) ○ 2019년 취업지원센터 특별교부금 교부 알림(중등직업교육정책과-924, 2019. 2.) ○ 2019학년도 직업교육 주요업무 계획	장학사1명, 주무관1명, 파견교사2명, 취업지원관6명	취업지원센터운영

연 번	소관부서	구성체의 정식명칭	구성체의기능및역할	구성원	세세부사업
			<p>획(진로직업교육과-618, 2019. 1.)</p> <p>2.기능및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취업지원 체제 구축 ○ 특성화고와 취업유관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연계 ○ 특성화고 취업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취업 정착률 제고를 위한 진로탐색 및 현장 적응력 강화, 추수지도 등 <p>3.취업지원센터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관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취업처 발굴 - 산.학.관 협력 강화 - 현장실습 운영지원 ○ 취업역량강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취업역량강화사업 지원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 자료 개발 ○ 취업지원서비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취업지원 관리 - 취업 모니터링 - 취업지원 콜센터 운영 		
8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프로그램개발및지원 ○운영매뉴얼작업(안전사고예방대책포함)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종합지원홈페이지 운영 ○안전요원연수지원등 	사무원 2명	<p>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수련교육</p> <p>수학여행지원사 업(특별교부금)</p>
85	학교보건진흥원	마음건강ONE-STOP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마음건강상담 ○저소득층대상의료비지원 ○교육및컨설팅등 	전문인력 1명	학교보건사업지 원
86	학교보건진흥원	학교흡연예방지원센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흡연예방및금연특색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상담사) 인력풀 구성·운영 - 체험부스 운영 및 교구대여 지원 - 금연학교, 안전지도 만들기, 공모전, 캠프 등 ○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및우수사례보급 ○흡연예방심화형실천학교담당자연수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운영 	전문인력 6명	학교보건사업지 원
87	민주시민생활교육 과	장애유형별 거점 지 원센터	시각, 청각, 지체중복장애학생에 대한통 합교육지원	거점센터 담당교사 4명, 유관 기관 관련자 4명	특수교육지원강 화(특별교부금)

2020년 교원 역량신장과 관련된 정책 예산 현황

(교육혁신과)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특색교육과정운영	학교혁신 기획·운영	152,000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수학과학담당교원전문성신장	94,580
	교육과정운영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194,780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외고·국제고자기주도학습전형등지원 (시도분담금)	52,845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자사고자기주도학습전형등지원	70,804
	연구시범학교운영	자율형공립고운영비지원	15,000
	ICT활용교육지원	SW교육지원	4,600
	ICT활용교육지원	SW교육현장안착및활성화(특별교부금)	1,200
	스마트교육지원	디지털시민성역량함양	2,300
교원대상 각종 연구회	ICT활용교육지원	SW교육지원	9,000

(중등교육과)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중,고)	123,586
	특색교육과정운영	일반고 교원 CDA 역량강화 직무연수	61,950
	교원연수지원	중등연수지원	1,918,303
	학력평가관리	학생평가내실화(특별교부금)	436,400
	학력평가관리	평가개선장학지원	80,000
	교실수업개선지원	교원역량성장지원	267,92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사심화연수	183,94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제2외국어교육활동지원	16,00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육내실화지원	45,00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육내실화지원(특별교부금)	80,500
교원대상 각종 동아리	교실수업개선지원	교원역량성장지원	300,000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육내실화지원	24,0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예방연수	45,600
	학교폭력예방지원	학생도박예방교육연수	21,656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안전망구축	16,500
	학생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역량강화(특별교부금)	54,000
	학생생활지도지원	보이텔스바흐핵심요원과정운영	57,300
	학생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	10,000
	학생생활지도지원	학교 성평등교육 강화 핵심교원 연수	6,700
	학생생활지도지원	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	3,000
	학생생활지도지원	세계시민교육환경조성	20,000
	학생생활지도지원	다문화교육교원직무연수	45,900
	학생생활지도지원	인권교육활성화	51,870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센터운영	25,680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신규및통합학급담당교원연수	99,000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특수학교(급)교원전문성신장연수	160,750
	학교보건관리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25,260
	학교보건관리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연수	30,900
	소 계		

(진로직업교육과)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진로진학교육	진로교육기반구축(특별교부금)	158,560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직업교육수업방법개선	645,00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32,80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협력종합예술활동	108,95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 지원	교원정보화연수실 운영	79,20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영상자료제작직무연수운영	9,620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	27,000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컨설팅장학지원단운영	38,698
	교육연구운영지원	인성진로교육지원	60,742
교원대상 각종 동아리	교과교육연구회지원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705,971
교원대상 각종 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교과교육지원	200,00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구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교원대상 연수 및 컨설팅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활성화 (원격프로그램개발)	80,000
	교원연수운영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180,480
	교원연수운영	(초등)자격연수	636,751
	교원연수운영	(초등)직무연수	854,961
	교원연수운영	(중등)자격연수	510,010
	교원연수운영	(중등)직무연수	828,420